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 국왕의 권위
- 2. 무신정권과 문신
- 3. 최씨정권과 문신
- 4. 무신정권기 문신의 정치의식과 그 성향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문신

1. 국왕의 권위

1) 중방정치와 국왕

고려의 전통적인 右文政策에 따른 武班에 대한 차별대우, 일반군인들의 불평불만 그리고 의종의 失政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마침내 武臣亂이 발발하였다. 그러나 무신란은 무신들의 상승된 지위1)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무력의 핵심을 이루는 일반군인들이 전적으로 동조하였기 때문에 성공할 수있었다.

의종 24년(1170) 8월 鄭仲夫, 李義方 등이 주동이 된「庚寅의 亂」이 성공하자 집권무신들은 많은 문신을 살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국왕인 의종을 폐출하여 거제도로 유배하였으며 이어 王弟 명종을 새 국왕으로 추대하였다. 명종 때에는 아직 무신정권이 안정되지 못한 상황이었기에 집권무신들 간의 정권다툼이 치열하였고, 정치 역시 고위 무신의 합좌기관인 重房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중방은 무신란 이후 정변 주역의 한 사람인 이의방이강화시킴으로써 명종 때 집권무신들의 정치적 중심기구로 등장하게 된다.2)

무신집권기 중방의 기능은 군사는 물론 警察, 刑獄, 백관의 任면, 기타 諸 規例의 판정 등 모든 정무에 간여하고 있었으며, 한편으로는 무신집정의 지 위가 확고하지 못하여 집권무신들의 전횡을 억제하는 자기조절의 기능도 수 행하였음을 간과할 수 없다.

¹⁾ 貴族政治期 현종대 이후 북방민족과의 전쟁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무신의 지 위를 향상시켜 갔으며 문종 30년 更定田柴科에서 무반의 대우가 좋아진 것이 나 예종 4년에 武學齋가 설치된 것은 이러한 추세의 반영이다.

^{2)《}高麗史》 권 77, 百官 2, 西班 序 및 권 128, 列傳 41, 李義方.

200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문신

《高麗史節要》권 12, 명종 때의 사료를 중심으로 중방의 권력행사에 대하여 규명해 보기로 하겠다.

- 1. 將軍 李永齡, 別將 高得時, 隊正 敦長 등이 이의방을 위하여 정중부에게 원수 갚기를 꾀하다가 일이 누설되니 중방에서 체포하여 먼 섬에 귀양보냈다 (《高麗史節要》권 12, 명종 6년 9월).
- 2. 興王寺의 중이 중방에 와서 고하기를 '절의 중이 德水縣 사람과 함께 반란을 일으킬 음모를 하는 자가 있는데 散員 高子章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하니 중방에서 중과 子章을 체포하여 먼 섬에 귀양보내고 비밀히 사람을 보내어 강물에 던져 버렸다(《高麗史節要》권 12, 명종 8년 1월).
- 3. 어느 사람이 중방에 호소하기를 '修國史 文克謙이 의종이 시행당한 사실을 그대로 바로 썼는데 主上을 시해한 것은 천하의 大惡입니다. 마땅히 무관으로 하여금 수국사를 겸임시켜 사실을 바르게 쓰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하였다. …(문)극겸이 史堂에서 무관인 崔世輔와 농담하며 말하기를 '儒官으로 상장군이 된 것은 나로부터이고 무관으로 同修國史가 된 것은 역시 公으로부터 비롯되었다'면서 서로 한바탕 웃었다(《高麗史節要》권 12, 명종 16년 12월).
- 4. 재추・중방・대간이 奉恩寺에서 회합하여 시장의 물가를 정하고 말(斗)과 곡 (斛)의 용량을 고르게 하며 위반하는 자는 섬에 귀양보내기로 하였다(《高麗史節要》권 12, 명종 11년 7월).
- 5. 여러 무신이 중방에 모여 문관으로 남아 있는 자를 모두 불렀는데 李高가 모두 죽이려고 하니 (정)중부가 말렸다(《高麗史節要》권 11. 명종 24년 9월).
- 6. 중방에서 동북 양계의 州・鎭 판관은 무관으로 임명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기를 奏請하니 이를 聽從하였다. 이 논의를 주장한 자는 장군 洪仲方이었는데, 무관 金敦義 등 6명이 (홍)중방이 나오기를 기다려 길을 막고 (그 잘못을) 호소하니 중방에서 체포하여 墨刑하고 섬에 귀양보내었다(《高麗史節要》권 12, 명종 7년 4월).

위의 사료 가운데 1과 2는 중방이 경찰 내지 형옥의 권한을 행사하였음을 말하여 주는 것이며, 3은 인사행정, 4는 시장가격을 사정하고 斗斛을 표준화 하는 등의 條規를 제정하였음을 말하여 주는 것이고, 특히 5와 6은 집권무인 들의 전횡을 억제하는 자기조절의 기능을 수행하였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무신정권의 전기에 해당하는 명종 때에는 아직 무신집정의 위치가 확고하지 못하여 무신세력의 중심기구인 중방에 의지하여 무신정권을 보전하였으므로 중방은 무신정권에 대한 항거를 방지하는 중심체가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명종대는 문반에 대한 탄압과 견제가 가장 심한 때이기도 하다.

집권무신들에 의해 의종의 同母弟인 명종이 새로운 국왕으로 추대되었다는 사실은 한편으로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국왕의 통치영역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음을 뜻한다. 무신집정과 중방의 견제 속에서도 국왕은 정치의 구심점으로서 정무의 수행이 가능하였고 무신에 대한 銓注權 행사와 과거제 운용에 영향력을 발휘함으로써 문신세력을 기반으로 한 국왕 자신의통치영역을 어느정도 유지할 수 있는 과도기적 시기였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金나라와의 외교관계를 주관하고 天命의 대행자인 군주의 기본적 책무로서 국가적 행사나 천재지변을 당하여는 詔書를 반포하거나 사면권을 행사하여 정치의 쇄신을 기하려 하였다. 또한 국가와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는 종교의식, 불교행사 등도 귀족정치기와 마찬가지로 빈번히 행하여졌다.

국왕은 銓政(인사행정)을 행함에 있어「政案」에 대한 최후의 결재자였을 뿐만 아니라 측근에 학식이 뛰어난 문신관료를 거느리고 있어 무신들의 간 섭을 받지 않은 채 과거제를 운용하여 급제자를 배출시켰다.

명종이 潛邸에 있을 때 꿈에 본 인물과 닮아 차례를 뛰어 넘어 중용된 閔令謨3)나, 翼陽公府의 典籤으로 있던 崔汝海4)가 명종이 왕이 될 꿈을 꾼 것을 아뢰어 이것이 인연이 되어 결국 현달하게 된 것이나, 일찍이 翰林院에 있을 때에 글을 잘 지어 왕태후가 乳瘡을 앓고 있으므로 왕이 기도하는 글을 짓게 했더니 그의 뛰어난 글로 말미암아 특별히 총애를 받아 輪林學士에까지 승진한 李純佑5)의 경우 등은 비록 무신집권기이지만 문신들의 전주권행사에 영향력이 컸음을 알게 하는 사례이다. 더욱이 명종이 인물을 등용할때 嬖臣・宦者들과 더불어 의논하여 엽관 운동과 뇌물이 공공연하게 행해짐으로써 정치기강의 문란을 초래했다는 기록6)은 이를 입증해 준다.

무신집권기는 사회적 혼란과 儒風이 부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신들의 벼슬길인 과거는 계속되었다. 시험관인 知貢擧와 급제자는 座主와 門生의 관 계를 맺어 일생을 통하여 긴밀하게 연결되었고 이를 중심으로 하나의 사회 적 집단이 형성되어 갔으며 그 정점에 국왕이 존재하고 있었다. 무신집권기

^{3) 《}高麗史》 권 101. 列傳 14. 閔令謨.

^{4) 《}高麗史》 권 101, 列傳 14, 崔汝諧.

^{5)《}高麗史》 권 99, 列傳 12, 李純佑.

^{6) 《}高麗史節要》 권 13, 명종 15년 6월.

국왕의 권위가 유지될 수 있었던 배경은 왕실과 깊은 연관을 가진 문신세력의 꾸준한 진출이 있기 때문이었다.

명종 때에도 귀족정치기에서와 같이 국왕은 司祭로서 왕실(조상)에 대한 제사 및 종교행사 등을 관장하고 천재지변이나 국가적 행사 그리고 왕실의 慶吊행사에 사면권을 발동하여 德治와 권위를 내세울 수 있었다.

국왕이 사제로서 왕실에 대한 제전 및 종교의식 등을 주관하는 것은 귀족 정치기에 있어서는 의례적인 행사였으나, 왕권이 크게 위축된 무신집권기에 와서는 묵시적으로 왕실의 권위를 내외에 표출하고 인정받는 구실을 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를 살펴 보기로 하자.

정월 경오 초하루에 景靈殿에 알현하였다. 9월 을유에 昌陵(世祖陵)에 알현하였다(《高麗史》권 19. 世家 19. 명중 2년).

정월 을축 초하루에 景靈殿에 알현하였다. 4월 을축에 친히 大廟에 締祭하고 宣旨를 내려 '…赦令을 내리고 무릇 締體에 참여하며 三陵에 배알한 자에게도 또한 선물을 내리라'고 하였다. 5월 병신에 端午이므로 景靈殿에 알현하였다 (《高麗史》권 19. 世家 19. 명종 3년).

10월 을유에 왕이 친히 大廟에 給祭를 지내고 죄수를 용서하였다(《高麗史》 권 20, 世家 20, 명종 16년).

9월 경신에 重陽이므로 景靈殿에 제향하였다(《高麗史》권 20, 世家 20, 명종 20년).

위의 사료는 왕실(조상)에 대한 제사의 기록이고, 한편 불교행사에 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6월 무오에 왕이 보살계를 大觀殿에서 받았다. 10월 宣慶殿에 百高座를 설치하고 仁王經을 읽었다. 을사에 승려 3만명을 공양하였다(《高麗史》권 19, 世家19, 명중 원년).

2월 계축에 燃燈으로 왕이 봉은사에 행차하였다. 有司가 태조의 옛제도에 의하여 2월 보름날로 연등할 것을 청하니 왕이 그 청을 어기기 어려워 좇았으나다음해부터는 다시 정월 대보름으로 하게 되었다. 3월 기사 초하루에 왕이 靈通寺에 행차하여 세조·태조·인종의 眞影을 배알하였다(《高麗史》권 19, 世家19, 명종 2년).

11월 계묘에 八關會를 베풀고 法王寺에 행차하였다(《高麗史》19, 世家 19, 명종 3년).

10월 병진에 百座道場을 대관전에 베풀고 中外로 하여금 승려 3만명을 공양하게 하였다(《高麗史》권 19, 世家 19, 명종 8년).

10월 임술에 仁王道場을 대관전에 베풀고 승려 3만명을 毬庭에서 공양하였

다(《高麗史》권 20. 世家 20. 명종 11년).

4월 임인에 華嚴法會를 洪圓寺에서 성대히 베풀고 경인·계사년간에 죽은 사람들의 명복을 빌었다(《高麗史》권 20, 世家 20, 명종 13년).

고려에서는 새롭게 왕이 즉위하면 大廟에 친히 제사지낸 후에 사면을 반 포하였다. 사면은 삼국시대부터 국왕만이 가질 수 있는 專權으로서 국왕은 이를 통하여 자신의 선정과 덕치, 그리고 권위를 내세울 수 있는 하나의 계 기로 삼았다. 삼국시대 사면을 실시하는 계기는 주로 新王 즉위 때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태자책봉, 순행, 천재지변 등이었다.7)

고려에서도 천재지변의 발생 때 국왕은 이에 대한 消災의 방법으로 의식적인 대책과 현실적인 대책을 실시하고 天意의 소재를 파악하여 이에 따랐다. 대개 전자의 경우는 스스로의 責己修德, 불교적인 祭齋의 거행, 도교의醮齋 등을 거행하였으며, 후자의 경우에는 죄수에 대한 사면의 실시, 조세의감면, 가중한 工役의 중지, 인사처리의 시정, 그리고 반란 음모에 대한 사전대비와 같은 구체적인 재해대책이 실시되었다.8)

명종 때에도 국왕은 고려왕실을 대표하여 금나라와의 외교관계를 주관하였다. 무신정권의 격변 속에서 즉위한 명종으로는 대외적으로 금나라 조정과의 事大外交를 통하여 실추된 국왕의 권위를 보장받으려 하였을 것이다. 고려와 금나라 양국은 정월과 11월에 정례적으로 사절을 교환하여 신년과 생신을 축하하였으며 이 밖에도 수시로 사절 왕래를 행하였다.

무신란 이후 대외적인 외교관계에 있어 커다란 변화는 무신들이 사절로 파견되는 것이 일반화되고 또한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점이다. 원래 문신귀족정치기에는 외국에 파견되는 사신과 書狀官은 문관에 한하였고, 그 것도 유교적 지식이 뛰어난 관리에 한하였다. 무관의 경우 이에 임명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武擧人의 使行까지도 허락되지 않았다.9) 명종 때에 성품이 잔인하고 탐학하였던 무관출신 李英搢10이 금나라에 사신가기

⁷⁾ 辛虎雄,〈高麗以前의 赦免制度〉(《高麗刑法史研究》, 東國大 博士學位論文, 1986), 232~235等.

⁸⁾ 李熙德, 〈高麗時代의 天文觀斗 儒教主義 政治理念〉(《韓國史研究》17, 1977).

^{9) 《}高麗史》권 16, 世家 16, 인종 9년 9월.

^{10) 《}高麗史》 권 100, 列傳 13, 李英搢.

를 요청하여 沿路에 재물을 요구하니 군현에서 다투어 뇌물을 준 것이 萬金이나 되었다는 사실이나, 금나라 사람이 "…너희 나라에 사람이 없어서 너를 고관으로 임명하여 使命을 받게 하였느냐"하면서 이르는 곳마다 모두 그를 업신여겨 꾸짖고 예로써 접대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사신의 관행이 무신란이전과 크게 달라졌음을 알게 해 준다.

그리하여 명종 12년에 "무릇 금나라에 가는 서장관은 國學 翰林의 儒官으로 才名이 있는 자를 보내도록 하라"¹¹) 하였던 것은 곧 그동안 외국에 파견되는 사행의 잘못을 시정하려는 국왕의 의도를 말해주는 것이다.

2) 국왕의 권위

무신집권기 무신들의 전횡으로 왕권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도 고려왕조가 붕괴되지 않고 존속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해답은 먼저 출신가문이 미천한 집권무인들이 전통적 신분사회에 대한 잠재의식을 불식할 수 없었고, 고려왕조를 상징하는 국왕의 권위를 무시할 수 없었던 데서찾게 된다. 명종 때에 일어난 무신정권에 대한 반란이나 집권무인들의 정권투쟁은 바로 국왕의 권위를 배경으로 하여 전개되었던 것이다.12)

국왕의 살해가 반란이나 정권투쟁의 명분으로 이용되었음은 다음 사료를 통하여 알 수 있다.

- 1. 李俊儀가 (동생 義方을 꾸짖어 '네게 세 가지 큰 죄악이 있다. 임금을 시해하고 그 第宅과 姬妾을 탈취하였으니 죄악의 하나이요…'라고 말하니 의방은 크게 노하여 칼을 빼어서 죽이려 하였다(《高麗史節要》권 12, 명종 4년 정월).
- 2. (趙)位寵이 군사를 일으켜 (이)의방이 임금을 시해하고 장사하지 아니한 죄를 聲言하였으므로 선왕을 禧陵에 받들어 장사하고 그의 화상을 海安寺에 봉안하였다(《高麗史節要》권 12, 명종 5년 5월).
- 3. 將軍 慶大升이 정중부와 그의 사위 宋有仁을 베어 죽였다. 조정의 벼슬아치들이 궁궐에 나아가 축하하자 대승이 말하기를 '왕을 시해한 자가 아직 있는데 어찌 축하할 수 있는가'하니 李義旼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다(《高麗史節要》권 12, 명종 9년 9월).

^{11) 《}高麗史》권 20, 世家 20, 명종 12년 6월.

¹²⁾ 金塘澤,〈高麗 崔氏武人政權과 國王〉(《高麗武人政權研究》, 새문사, 1987).

1은 이의방 형제의 불화가 빚은 사건이지만, 형 이준의가 동생을 꾸짖어임금을 축출하고 시해한 죄를 성토하자 이의방은 격분하여 형을 죽이려 하였다는 내용이다. 한편 2는 조위총이 정중부·이의방을 타도하기 위한 구실로서 이의방이 임금을 시해하고 장사하지 않은 죄를 성토하므로 의종의 화상을 海安寺에 봉안했다는 기록이다. 한편 3은 장군 경대승이 정중부를 죽이자 조정의 벼슬아치들이 이를 축하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경대승은 왕을시해한 이의민이 있음을 상기시킴으로써 국왕의 권위를 인정하였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의 정권 장악을 정당화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重房政治의 취약성에서 고려왕조의 계속성을 찾을 수 있다. 명종 때에는 아직 무신정권이 안정되지 못하여 그들의 지위가 확고하지 못하였고 정치도 중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정치상황이 한편으로는 미약하나마 왕권을 유지시켜 주는 배경이 되기도 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무신집 정자들이 王氏의 고려왕조를 감히 넘보려는 의도조차 갖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명종 때에 국왕의 권위가 지속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고려왕실과 깊은 연관을 갖는 문신세력의 집요한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의종 때보다 수적으로는 감소하였지만, 무신란 이후에도 많은 문신들이 국정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외교를 통한 금나라 조정의 후견적 측면도명종 당시 국왕의 권위를 뒷받침해 준 또 하나의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명종 즉위 후 금나라에 告奏使로 파견된 庾應圭는 金帝의 禪位에 대한 의심과 할난을 단식투쟁으로 극복하면서 回詔를 받아오는데 공을 세웠다.13)

金甫當의 亂을 당하여 '文臣之長'으로 지목된 宰相 尹鱗瞻이 묶임을 당하고 이어 유응규를 핍박하려 함에 그가 이를 힐난하면서 의연하게 대처하자, 諸 將이 말하기를 "庚寅의 일은 金帝에 대한 公의 告奏가 아니었더라면 우리 무리는 죽어 젓담게 되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사죄하였는데,14 이 같은 당시의 상황인식을 다만 의례적, 관념적 측면으로만 보아 넘길 수는 없는 것이다.

최충헌은 집권 후 국왕의 폐위를 마음대로 하고 독자적인 집정부라 할 수

^{13) 《}高麗史》 권 99, 列傳 12, 庾應圭.

^{14) 《}高麗史節要》 권 12, 명종 3년 9월.

있는 敎定都監을 설치하여 국정을 천단하면서도 스스로 왕이 되지는 못하였다. 무신세력의 대두로 인해 신분제가 붕괴되고, 귀족제의 해체를 야기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유교적 전통이 강한 고려왕조에 있어서 전통적 신분관념을 떨쳐버릴 수 없는 당시의 사회적 여건이나, 북방민족과 연관을 갖는 대외정세의 추이는 최씨정권 자체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다.

최씨집정자들은 국왕이 되려는 모험을 시도하여 정권의 몰락을 초래하기보다는 오히려 국왕의 권위를 이용하여 그의 정권을 공고히 하려 하였다. 15) 최충헌 형제가 政敵 이의민을 제거할 때에 "그가 일찍이 시역의 죄를 범하고 백성을 포학하게 침해하여 왕위를 엿보고 있었다" 16)는 구실을 들고 있지만, 최충헌은 집권한 직후 왕에게 「封事10條」를 올려 舊政을 개혁하고 新政을 도모하여 태조의 正法을 준행할 것을 한결같이 건의하였다. 이는 고려왕조에 대한 권위를 부정하지 않겠다는 그의 의도를 엿보게 하는 것이다.

최충헌 집권 후 동생 崔忠粹가 그의 딸을 태자비로 들여 정치적 열세를 만회하려 하다가 최충헌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살해되었다. 이는 비록 최충 헌 형제의 권력투쟁에서 비롯된 문제이기는 하지만, 최충수가 그의 딸을 태 자비로 들이려 하는 것을 최충헌이 반대하여 설득하는 다음의 내용은 시사 하는 바가 크다.

(최)충헌이 타이르기를 '지금 우리 형제의 세력이 비록 한 나라를 기울이고 있으나 가계가 본래 미천하니 만약 딸을 東宮에 시집보낸다면 비난이 없겠는 가. …옛 사람이 말하기를 앞 수레가 넘어지면 뒷 수레가 경계한다 하였는데, 전번에 이의방이 딸을 시집보냈다가 마침내 남의 손에 죽었으니 지금 그대가 앞 사람의 실패한 자취를 따라 하는 일이 옳겠는가'라 하였다(《高麗史節要》권 13, 명종 27년 10월).

이러한 것은 무신집정자가 아직 전통적 신분사회에 대한 잠재의식을 떨쳐 버리지 못하였다는 것이 되며, 또한 왕실의 권위를 배경으로 하여 권력투쟁 이 전개되고 있음을 알게 해 주는 기록이기도 하다.

이의민 일당을 타도한 최충헌은 그의 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구세력의 상징인 명종을 폐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명종의 후계자 선정문제는 최충

¹⁵⁾ 金塘澤,〈崔氏武人政權과 國王〉(《韓國學報》42, 1986).

^{16) 《}高麗史節要》권 13, 명종 26년 4월.

헌의 집권 후 그의 형제간에 일어난 최초의 정치적 대립의 양상을 띤 사건이었으나, 이 문제는 최충헌이 지지한 平涼公 敗(神宗)을 왕위에 올림으로써일단락지었다. 그런데 이 때 최충헌에 동조하였던 조카 朴晋材의 다음과 같은 발언은 금나라와의 외교관계에 있어서 주목을 끌게 한다.

(박)진재가 말하기를 '緘(진)과 咬이 모두 왕이 될만하나 금나라에서 진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니 만일 진을 왕으로 세운다면 저들이 왕위를 찬탈하였다고할 것이니 민을 세우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의종의 옛일처럼, 아우에게 왕위를 전했다는 것으로서 금나라에 알린다면 후환이 없을 것입니다'라 하니 의논이이에 정하여 졌다(《高麗史節要》권 13, 명종 27년 9월).

이것은 새왕을 세우는데 있어서 독재정권인 최씨정권 조차도 금나라를 크게 의식하고 있었던 것을 확인시켜 주는 하나의 실례가 된다.

예측대로 금나라는 신종 원년에 宣問使 孫俁를 보내와 전왕의 양위를 힐문하고 "詔勅이 있는데 반드시 전왕을 보고야 친히 주겠다"하였으나, 門下侍郎趙永仁의 임기응변으로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외국어에 능통하여 금나라 사신의 접대로 출세한 金鳳毛와 그의 자손들이 최씨정권과 연결하여 크게 번성하면서 김봉모계의 慶州 金氏를 이루어 뒤에 충선왕의 '宰相之宗'에 오르는 귀족가문이 된 것은 그 동안 금나라와의 관계의 일면을 잘 보여준다.17)

최씨 집권기인 13세기 초엽 동아시아의 정세는 몽고족의 흥기로 일대 변동기를 겪고 있었으며, 滿洲에서는 금나라가 쇠퇴하고, 고려는 대외적으로 새로운 시련기를 맞게 된다. 금나라가 쇠약해진 틈을 이용하여 독립하게 된 거란족이 몽고군에게 쫓겨 고려로 침입하였다.

최충헌이 죽자 그 뒤를 이은 崔瑀(怡)는 능숙한 정치적 수완으로 그의 부 친이 구축해 놓은 권력적 기반 위에 왕실의 권위를 배경으로 그의 정권을 한층 더 공고히 하였다.

최우가 집권할 무렵 동아시아의 정세는 몽고족의 강성으로 한층 더 긴박 감이 감돌게 되었고, 만주에서 금의 쇠망과 함께 고려는 대몽항쟁의 시련기 로 접어들게 된다. 특히 몽고 침략에 접한 최우정권은 단호한 항전을 결의하

^{17) 〈}金鳳毛墓誌銘〉(《朝鮮金石總覽》上, 朝鮮總督府, 1919). 《高農史》 권 101, 列傳 14, 金台瑞.

고 고종 19년에 江華 천도를 단행하여 대처하였으며, 국왕을 앞세워 대몽교 섭에 임하는 한편 국내의 강화 여론을 무마하였다.

최씨정권이 존립하기 위하여는 대몽항쟁이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몽고와의 강화는 최씨정권의 지위를 무의미하게 만들어 결국 최씨정권의 몰락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은 최우 자신도 모를 리가 없었다. 최우가 조직한 三別抄는 都房과 더불어 최씨정권의 군사적 지주로서 대외적인 시련기를 맞이하여 대몽항쟁의 핵심부대로서 괄목할만한 활약을 하였다. 이와 같은 대몽항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왕은 대몽교섭의 상징적 존재로서 그 권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3) 국왕과 문반 · 민중

명종은 의종의 동복아우로 庚寅亂 직후 정중부, 이의방 등 정변의 주동인물에 의하여 옹립되었다. 경인란의 성공으로 많은 문신들이 살해되었지만 이런 혼란의 와중에서도 모든 문신이 학살된 것이 아니고 免禍救命된 문신도 적지 않았다. 무신란에 가담한 무신들 가운데 비교적 온건한 태도를 취했던 집단¹⁸⁾은 무신란의 확대를 원치 않고 있었다. 또한 政務面에서 미숙한 집권무신들은 정책수립 및 행정실무를 담당할 문신들을 필요로 하였고, 민심을 수습 안정시키기 위하여도 덕망있는 옛문신의 포섭 등용은 효과적인 것이었다.

무신정권 성립 후 새로 등용된 문신층은 왕의 측근에서 신임을 받고 무신 정권에 협조할 수 있는 옛문신과 과거를 통하여 진출하는 신진문신이 주류 를 이루었다. 무신란 직후인 명종 즉위년 9월 문극겸의 批目에 의하여 새로 등용된 주요 문신을 보면 다음과 같다.¹⁹⁾

· 任克忠:中書侍郎平章事

韓 就:樞密院使 尹鱗瞻:知樞密院事

^{18) 《}高麗史》권 128, 列傳 41, 鄭仲夫와 권 18, 世家 18, 의종 24년 9월 및 권 100, 列傳 13, 陳俊.

金塘澤,〈李義旼政權의 性格〉(《歷史學報》83, 1979)에서는 初期 武臣政權에 참여한 무신들을「가담집단」과「비가담집단」으로 나누고,「가담집단」을「온건집단」과「행동집단」으로 나누었다.

^{19) 《}高麗史節要》 권 11, 의종 24년 9월.

・ 文克謙:右承宣・御史中丞

· 庾應圭: 工部郎中

무신들이 집권하는 격변기임에도 불구하고 禍를 면한 문신들이 宰樞兩府로부터 六部·臺省職 등 요직에 임명되고 있다. 무신정권 성립 후에도 문신관료들이 국정에 꾸준히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무신정권 아래에서행정실무를 담당한다는 중요한 직책에 있었기 때문이지만, 국왕의 전주권이계속 행사되고 있었다는 점도 큰 몫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국왕의 전주권에 대하여는 이미 앞절에서 언급하였다.

무신집권기에 정권은 무신이 차지하였다 하더라도 실제로 정무를 다루는데는 문신이 아니고는 감당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문신을 양성하기 위한 유학교육이 여전히 행해졌고 비록 儒風이 부진한 가운데도 과거 또한 중단되지 않고 설행되었다.²⁰⁾

집권무신들은 국왕과 문신들이 밀착하는 것을 항상 견제·탄압하였고, 무신들의 불법과 부당한 처사에 대한 대간의 탄핵을 그들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여 응징하려 하였으며, 가능한 한 많은 東班職을 차지하여 자신들의 권력을 신장시키고자 하였다.

정중부 일파의 문신에 대한 견제와 탄압은 다음과 같은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이다.

명종 8년 7월 太學博士 盧寶璵를 지방관인 蔚州防禦副使로 임명하게 되자 參知政事 송유인은「文武交差之法」을 이유로 하여 告身에 서명하지 않고 끝내 중방까지 동원하여 자기의 뜻을 관철시켰다. 또 11월에는 문관인 민영모가 먼저 中書侍郎平章事가 되었던 바 왕은 송유인을 민영모보다 윗자리에 班列시키려 하였는데, 그 배경에는 송유인이 정중부의 사위인데다 무신으로서 기세가 드높아 왕의 배려에 의한 것이나, 결국 송유인의 사양으로 원만히 해결되었다. 정중부의 가노가 금령을 범했으므로 臺官인 中丞 宋許와 御史 晋光仁이 잡아심문하자 정중부가 노하여 송저 등을 죽이려 하므로 그의 아들 鄭筠이 간하여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왕은 정중부가 분한 마음을 풀지 않을까 염려하여 명종 8년 7월 송저의 관직을 파면시키고 진광인을 工部員外郎으로 좌천시켰다(《高麗史節要》권 12, 명종 8년).

²⁰⁾ 李奎報는 14세 되던 辛丑年(1181)에 비로소 文憲公徒가 되어 誠明齋에 들어가 학업을 익혔다(《東國李相國集》年譜;《補閑集》).

문극겸과 韓文俊이 왕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었는데, 그 때문에 송유인의 미움을 받아 명종 9년 7월 樞密院使 문극겸은 尚書左僕射로, 추밀원부사 한문 준은 判司宰事로 좌천되었다(《高麗史節要》권 12, 명종 9년 7월).

이와 같은 일련의 사례를 통하여 볼 때 국왕은 정치의 중심부에서 문신과 무신의 알력·대립을 완화시키고 문신에 대한 예기치 못한 박해를 최소화시 키는 조정자의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정중부의 횡포에 분개하고 있던 청년장군 경대승이 명종 9년(1179) 정중부일당을 제거하고 정권을 잡게 되자「庚寅亂」에 의해 추대된 국왕이나 집권무신들에게는 일대 충격적인 사건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무신들은 경대승을 공동의 적으로 돌리게 되고 경대승은 신변의 안전을 도모하여都房21)이라는 사병집단을 두게 된다. 한편 명종은 경대승에 대하여 내면적으로는 꺼리는 것이 있었으나 겉으로는 두터운 은총을 베풀면서 기존 무신세력과의 알력과 권력적 대립관계를 원만하게 조정해 나갔다.

경대승은 문신에 대하여 비교적 호의적인 인물이었다. 그의 강건하고 학식을 중히 여기던 성품은 다음 사료를 통하여 엿볼 수 있다.

항상 무신들의 불법한 행동에 분개하여 개연히 복고의 뜻이 있었으므로 문신들이 기대어 존중히 여기었다. 왕이 (경)대승을 불러 문기를 '정균의 承宣職을 卿에게 제수코자 하노라'하니, 그는 말하기를 '신은 문자를 알지 못하니 감히 바랄 바가 아닙니다. …승선은 왕명을 출납함이니 儒者가 아니면 불가합니다'라 하였다. …사람이 많이 따르고 붙었으나 학식과 勇略이 있는 자가 아니면 문득 거절하니 무신들이 모두 그 위엄을 두려워하여 감히 방자하게 굴지 못하였다(《高麗史》권 100, 列傳 13, 慶大升).

무신정권 성립 후 한동안 벼슬과 거리가 멀었던 문사들이 任宦의 길을 찾아 과거에 응시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의 정치상황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李仁老는 명종 10년 과거에서 29세의 나이로 장원급제하였으며, 문명이높은 吳世才도 명종 12년에 나이 50으로 과거에 급제하였고, 科試에 부정적

²¹⁾ 都房이란 말은 원래 사병들의 숙소를 가리키는 것이었으나 뒤에는 宿衛隊를 지칭하는 말로도 사용되었다. 도방은 경대승의 신변보호 뿐만 아니라 비밀탐지, 반대세력 숙청을 비롯하여 主家의 권세를 배경으로 약탈·살생 등을 자행함으로써 그 폐단이 자못 많았다.

입장을 취하던 林椿 역시 과거를 거쳐 宦路를 찾으려 하였다.22)

명종 13년(1183) 경대승이 죽은 후 천민 출신인 이의민이 왕의 부름을 받고 새로운 무신집정자로 등장하였다. 무신정권의 시대적 상황에서 국왕이 새로운 무신집정자를 선택할 수 있었다는 것은 무신세력에 대처해 나가는 국왕의 정치적 위치가 결코 허약하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명종은 이의민과 제휴함으로써 기성 무신세력에게 신뢰와 안도감을 주고 경대승집권의 충격에서 벗어나 종전의 정치질서를 유지해 나갈 수 있었다. 명종에 대하여 성품이 유약하고 결단성이 없어서 정권을 아랫 사람에게 농단당했다는 史家의 평²³⁾은, 당시의 시대상황을 너무 피상적으로 보고 군주의 책무에 대한 당위성만을 강조한 견해라고 볼 수 있다.

이의민정권의 등장은 자유분방한 기질을 가진 일반 문사들에게는 시련기요, 암흑기였다. 무신란 이후 혼란한 세태는 문신들로 하여금 현실도피적인은거생활을 강요하였고 그들 자신이 耆老會나 竹林高會 등을 만들어 자연을 벗삼아 詩酒로써 소일하는 풍조를 가져오게 하였다. 오세재, 임춘 등이 중심이 된 이른바「竹林七賢」²⁴⁾의 등장도 이러한 세태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이의민정권이 장기화되면서 명종은 정사를 게을리하고 그림에 열중하는가 하면 관리를 등용할 때 폐신·환자들과 더불어 의논함으로써 엽관운동과 뇌물이 공공연하게 행해져 정치기강의 문란을 초래하기도 하였다.²⁵⁾

명종 때에 크게 활약하던 重臣 문극겸이 동왕 19년에 죽었고, 그 다음 해에는 연로한 한문준이 세상을 떠났으며, 門下侍郎平章事로 致住한 민영모도 동왕 24년 3월에 사망하였다. 그리하여 명종의 울타리는 허물어져만 갔다.

최충헌이 명종 26년(1196) 이의민정권을 타도하고 집권하게 되자 정치적 혼란은 점차 안정되어 갔고 무신정권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최충헌은 집권 초에 趙永仁・奇洪壽・任濡・崔詵 등 그와 친분이 있거나 인척 관계에 있던 고위문무관을 측근으로 맞아 들였으며²⁶⁾ 그의 장기적 집권체제

^{22) 《}破閑集》 권 下・《東文選》 권 59. 與皇甫本書.

^{23) 《}高麗史節要》권 12. 명종 14년 2월.

^{24) 《}高麗史》 권 102, 列傳 15, 李仁老.

^{25) 《}高麗史節要》권 13, 명종 14년 12월 · 15년 6월.

^{26) 《}高麗史》 권 102, 列傳 15, 李奎報・《高麗史節要》 권 13, 명종 27년 12월.

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왕실의 강력한 지지기반인 문신세력과 국왕과의 공식적인 연결 통로를 철저히 차단하려 하였다. 이리하여 최충헌은 집권 후 문무관의 전주를 장악하여 관료사회에 군림하였고, 그의 정권을 보다 확고히하기 위하여 문반에 대한 우대정책을 썼을 뿐만 아니라 과거제를 강화 운용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조처가 국왕의 문신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을 크게 감소시킨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문반계층은 그들의 속성으로 보아 국왕의 잠재적 지지세력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음도 간과할 수 없다. 곧 무신정권 몰락 후 왕정복고와 같은 정치적 변화를 맞아 문신들의 향배가 이를증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崔瑀의 문신에 대한 정책은 최충헌의 정책을 답습하면서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전주권을 행사함에 있어 政房²⁷⁾의 설치라던가 文士에 대한 회유책으로 書房²⁸⁾을 두어 운영한 것이 그것이다.

최우는 최충헌에 이어 국가의 중대사는 주로 宰樞會議를 통하여 처리함으로써 중방의 역할을 크게 약화시켰다. 왕실과 연결되어 있던 문반이 국왕을 지지하는 세력기반이었다면 피지배층인 민중은 국왕과 무신정권에 대하여어떠한 관계에 있었나 하는 것을 규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민중은 무신집권기라는 고려왕조의 정치적 격변기에 민란으로 그들의 불만을 표출하면서도 국왕의 타도가 아닌 反武臣政權的 태도를 분명하게 표방하였다. 또한 그들은 고려왕조가 유지될 수 있는 사회적 정치적 세력으로 집단화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국왕의 지위를 보전케 하는 배경이 되었다고 하겠다.

민란의 근본원인은 무신정권 이전인 문신귀족의 전성기부터 존재하여 왔다.29) 그러나 명종대(중방정치시기)에 민란을 촉발시킨 원인은 중앙의 무신정

조영인과 임유는 최충헌의 집안과 인척관계에 있었으며 최선은 최충헌 집권 이전부터 그와 친분을 맺고 있었고 기홍수는 최충헌이 가장 신임하는 무관 중의 한 사람이었다(朴菖熙、〈崔忠獻小考〉、《史學志》 3, 1969).

^{27) 《}高麗史》 권 129, 列傳 42, 叛逆 3, 崔忠獻 附 怡.

²⁸⁾ 위와 같음.

²⁹⁾ 민란 발생의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守令의 횡포로 백성이 流亡하였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는데, 이러한 면은 무신정권 이전 예종대에도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高麗史》권 12, 世家 12, 예종 즉위년 12월에 "甲申 敎曰…今諸州郡司牧 淸廉憂恤者 十無一二 慕利釣名 有傷人體 好賄營私 殘害生民 流亡相繼十室九室 朕甚痛焉…"이라 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권과 결탁한 지방관(주로 守令) 및 향리의 탐학과 횡포였다.30) 경제적 측면에서 민란의 또 하나의 원인은 토지겸병31)에 따른 농촌사회의 피폐와 궁핍화를 들 수 있다. 명종대에 오면 민중들은 신분사회의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무신란의 주역인 정중부·이의방 등 집권무신들은 미천한 신분출신이었고, 그 우익의 무신들도 대부분 그러하였다.32) 따라서 민란의 다른 원인으로 민중의 사회의식과 신분의식의 상승을 들 수 있다. 「庚寅의 亂」을 계기로 민중들도 집권무신들과 같이 정치적 출세와 사회참여가 가능하다고 자각하게되었고 이러한 민중의 자각은 하극상의 풍조와 함께 민란을 일으킬 충분한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이들 민란이 왕권과 무신정권에 미친 영향은 어떠했는가를 사건 별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公州 鳴鶴所에서 일어난 亡伊, 亡所伊의 난은 명종 6년에 일어난 대규모의 농민반란이었다. 그들에 대한 회유책으로 조정에서는 그 해 6월에 그들의 향 리인 명학소를 忠順縣으로 승격시키고 수령을 파견하여 안무케 하였다.

이 난이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은 정중부 일파의 전횡에서 비롯된 것으로 《高麗史節要》권 12, 명종 6년 8월조에서 "諸領의 군사가 익명의 방을 붙여 말하기를 '시중 정중부 및 그 아들 승선 균과 그 사위 僕射 송유인이 권세를 마음대로 하고 방자하였다. 南賊이 일어남은 이로 말미암음이니 만약 군사를 내어 치려면 반드시 먼저 이 무리들을 제거한 뒤에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므로 (정)균이 이를 듣고 두려워 하여 해직을 빌고 여러 날 동안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였고, 《高麗史》권 128, 鄭仲夫傳에서도 "남적이 일어난 것은 당시무신집정인 정중부 일가의 전횡에 그 근원이 있다"라고 하여 사실상 민란의원인이 무신정권에 있음을 밝히고 있어서, 민란은 역설적으로 말하여 무신정

^{30)《}高麗史》 권 74, 志 28, 選舉 2, 全國 選用監司.

^{31) 《}高麗史》권 128, 列傳 41, 叛逆 2, 鄭仲夫. 최충헌형제의 封事 제7조 가운데 "此聞 郡國吏多逞貪 廉恥道息'이란 말이 있어 그 당시 州縣의 吏(那吏)가 탐오하여 염치를 저버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高麗史》권 129. 列傳 42, 崔忠獻).

³²⁾ 정중부·이의방을 추종했던 무인들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로 杜景升·于學儒· 奇卓誠·洪仲方·陳俊·崔世輔·朴純弼·李英搢·白任至·鄭邦佑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대체로 "起自行伍" "系本寒微" "門地賤微" "起自電吏" 등으로 표현된 신분의 출신이었다(《高麗史》권 100, 列傳 13 참조).

권을 견제하고 간접적으로 왕권을 유지케 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경대승 집권기인 명종 12년에는 全州에서 官奴의 亂33)이 일어났다. 즉 전주의 司錄인 陳大有 및 上戶長 李澤民 등이 官船의 건조를 督役함이 너무나가혹하였으므로 旗頭(기수병) 竹同 등 6인이 관노와 불량배를 불러모아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다. 이 전주의 난은 그 주체자가 旗頭 竹同 등의 군인이었으나 노예가 직접 참가한 최초의 반란으로서 그 동기가 지방관과 향리의 가혹한 督役, 驅使에 있었으나 보다 근원적인 것은 무신정권과 결탁한 지방관의 고질적인 횡포와 탐학에 있었던 것이다.

명종 23년 이의민 집권기에 경상도 雲門과 草田에서 일어난 金沙彌와 孝心의 난은 민중과 무신정권 및 국왕과의 미묘한 관계를 잘 나타내고 있다. 당시 무신집정자인 이의민은 신라 부흥의 뜻을 품고 김사미·효심 등과 내통하였으며 그의 아들 李至純(將軍)도 대장군 全存傑의 휘하에서 반군을 치는 관군의 지휘관으로서 南賊과 내통하여 軍中의 동정을 반군에 누설시켜 관군의 패배를 자초케 하였다.34)

한편 그 해 12월에 관군의 대토벌 작전이 어느 정도 성공하였을 때 남적의 괴수 가운데 한 사람인 得甫가 대궐에 들어와 생업에 종사할 것을 허락하여 주기를 청하므로 국왕은 有司에 명하여 놓아 돌려 보내어 현지 兵馬使의 처분에 맡긴 일이 있으며,35) 이듬해 8월에는 남적의 괴수가 그 무리 李純 등 4명을 보내어 대궐에 이르러 항복하기를 청하므로 국왕은 그들에게 隊正을 제수하고 布를 하사하여 돌려 보냈다36)는 기록이 있다. 이는 민란의 지도자들이 협상 대상을 국왕으로 하고 집정무신을 제외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도 그들의 목표가 국왕의 타도나 적대감에 있던 것이 아니고 무신정권 내지 그와 연결된 지방관의 탐학・횡포에 대한 항거였다고 생각된다.

무신정권의 확립기라 할 수 있는 최씨집권기에 일어난 민란에서도 우리는 국왕의 위상과 관계 있는 중요한 사태를 경험하게 된다.

^{33) 《}高麗史》권 20. 世家 20. 명종 12년 3월.

^{34) 《}高麗史》 권 128, 列傳 41, 李義旼.

^{35) 《}高麗史》 권 20, 世家 20, 명종 23년 12월.

^{36) 《}高麗史》 권 20, 世家 20, 명종 24년 8월.

최충헌 집권 초인 신종 원년(1198) 開京에서 萬積이 주동이 된 대규모의 公私奴婢의 반란이 일어났다.37) 이 반란은 개경의 모든 노비들과 연락하여 계획적으로 신분해방, 나아가서는 정권탈취를 꾀하였다는 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비록 사전에 발각되어 거사는 하지 못하고 말았지만 개경 北山에서 공사노비를 모아 놓고 행한 다음과 같은 만적의 선동적 연설에서 시사받는 바가 크다.

庚癸 이래 朱紫(高官大爵)는 賤隷 속에서 많이 일어났다. 將相의 씨가 따로 있겠는가. 때가 오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어찌 육체를 수고롭게 하고도 매질 밑에서 괴로워야 하겠는가. …먼저 최충헌 등을 죽이고 이어 각기 그 주인을 죽여 賤籍을 불살라서 三韓으로 하여금 천인을 없게 하면 公卿將相은 우리가 모두 할 수 있다(《高麗史》권 129, 列傳 42, 叛逆 3, 崔忠獻).

여기에서 만적의 주장 속에 "장상의 씨가 따로 있겠는가"라고 한 것이나, 최충헌 등 집권자를 죽인 후 천적을 불태워 삼한에 천인을 없애고 자기들이 공경장상이 되어 정권을 장악하자는 선동은 그들의 봉기목적이 국왕의 타도 가 아닌 신분해방 및 정권쟁취에 있었다는 점이 매우 특징적이다.

〈羅滿洙〉

2. 무신정권과 문신

고려 중엽인 의종 24년(1170) 무신란의 발발로 무신들이 정치의 주도세력으로 등장하여 권력을 장악함으로써 무신정권이 성립되었다. 그러나 무신들만이 정권에 참여한 것은 아니고 많은 문신이 관직에 등용되어 무신정권에 협력하였던 것이다.

무신정권기의 문신에 대하여는 그동안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다.1) 지금까

^{37)《}高麗史》 권 129, 列傳 42, 叛逆 3, 崔忠獻.

¹⁾ 閔丙河,〈高麗武臣執政時代에 대한 一考〉(《史學研究》6, 韓國史學會, 1959). 邊太燮,〈高麗朝의 文班과 武班〉(《史學研究》11, 1961;《高麗政治制度史研究》, 一潮閣, 1971).

지 연구된 바에 의하면 무신정권기는 초기 무신정권기와 최씨정권기로 구분하였고, 문신들은 은거한 경우와 정권에서 소외된 경우 그리고 정권에 참여한 인물 등으로 나누어 검토되었다. 그런데 종래에는 무신정권기의 한 시기 또는 문신들 중 일부만이 집중적으로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 즉 연구시기와 범위를 압축하여 文臣像 규명에 큰 학문적 성과를 이룩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전무신정권기의 모든 문신에 대한 총체적 이해는 소홀해질 수박에 없었다.

여기에서는 기왕의 연구업적을 참조·종합하면서 무신정권기를 초기 무신 정권과 최씨정권으로 나누고, 무신란 이후 모든 은신의 동향과 정치활동을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최씨정권의 對文臣優待政策의 실상을 추구하고, 문신 들의 역할과 정치적인 지위에 관하여 검토한 다음 문신의 정치의식과 그 성 향을 살피고자 한다.

「文臣」이란 文人·文士·文班·儒者 등을 포괄하여 편의상 지칭한 것이며, 무신세력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시기와 내용에따라 용어가 달리 쓰여지기도 하였음을 밝혀 둔다.

1) 무신란과 문신의 동향

의종 24년(1170) 경인 8월에 무신들이 봉기하면서 "무릇 文冠을 쓴 자는 胥吏라 할지라도 남김없이 죽이라"고 하여 문신 멸종의 구호를 외치며 대소 문신에 대해 무차별로 대량 살륙을 감행하였다. 이어 명종 3년(1173) 계사 9 월 金甫當의 반란 때에는 앞서 경인란 때 살아남은 문신들이 다시 참화를 입어 10일간에 걸쳐 모두 살해되었거나 강물에 던져져 거의 전멸상태에 이

朴菖熙, 〈武臣政權時代의 文人〉(《한국사》7-武臣政權과 對蒙抗爭一, 국사편 차위원회, 1973).

金毅圭,〈高麗武臣執權期 文臣의 政治的 動向〉(《史學論志》3, 漢陽大, 1975). 李佑成,〈高麗武臣執權下의 文人知識層의 動向〉(《嶺南大開校紀念 國際學術會 議發表論文集》, 1977;《韓國의 歷史像》, 創作과 批評社, 1982).

金毅圭,〈高麗武人執權期 文士의 政治的 活動〉(《韓祐劤博士停年紀念 史學論 叢》,知識産業社, 1981).

張叔卿、〈高麗武人政權下의 文士의 動熊와 性格〉(《韓國史研究》34, 1981).

南仁國,〈崔氏政灌下 文臣地位의 變化〉(《大丘史學》22, 1983).

金塘澤、〈崔氏政權과 文臣〉(《高麗武人政權研究》, 새문사, 1987).

羅滿洙、〈高麗武人政權期의 國王과 文班〉(《震檀學報》63, 1987).

르렀다고 한다.2) 역사상 일찍이 없었던 문신의 수난기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두 차례에 걸친 문신의 대학살로 고려 전기 문신 중심의 정치체제는 종언을 고하고 무신정권기가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의종은 폐출되고 王弟인 명종이 새 국왕으로 추대되었다. 그러나 이 같은 무신 폭거의 와중에서 문신들이 전멸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살륙된 문신보다는 화를 면한 문신의 수가 더 많았던 것 같다.3) 이제 그 사례와 목숨을 구한 문신들을 사료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入山逃避:神駿・悟生・權敦禮・李仁老

불행하게 의종 말년에 무신의 난이 일어나 문신들을 멸살함에 薰과 蕕가 냄새를 같이 하고 옥과 돌이 함께 불타는 것처럼 선악의 구별이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 몸이 虎口를 벗어난 자는 깊은 산 속으로 종적을 숨겨 갓과 띠를 벗어던지고 가사를 입고서 살아남은 동안을 보냈으니 神駿・悟生과 같은 무리가 그것입니다(《櫟翁碑設》前集 1).

그저께 난리를 만났을 때에 사람들이 모두 깊이 숨고 멀리 달아나 이름을 도둑질하고 거짓 복종하여 한때의 어려움을 도피하더니…넉넉히 貪汚의 마음을 경계한 자는 오직 北原處士 權君(敦禮)이 있었을 뿐이오(《西河集》권 4, 寄伽倻山人悟生書).

李仁老는…정중부의 난에 머리를 깎고 피신하였다(《高麗史》권 102, 列傳 15. 李仁老).

2. 禮禺武臣:徐恭・李奕蕤

恭은…사람됨이 담력과 지략이 있고 말타고 활쏘기를 잘하여 여섯 번 兩界兵馬使가 되니 士卒이 즐겨 따랐다. 재상이 되어서는 뜻이 더욱 겸손하여 문사의 교만함을 미워하고 무인을 예우하였으므로 정중부의 난에 중방이 巡檢軍 22인으로 하여금 그 집을 둘러싸고 지켜서 화가 미치지 아니하였다(《高麗史》권 94, 列傳 7, 徐熙 附 訥・恭).

奕蕤는 閱閱에서 생장하여 부귀로서 사람에게 교만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소중히 여겼으므로 정중부의 난을 면하였다(《高麗史》권 95, 列傳 8, 李子淵 附 奕蕤).

3. 德望之士:崔惟清

崔惟淸은…정중부의 난에 문신이 다 살해를 당하였으나 여러 장수가 평소 惟淸의 덕망에 감복하여 군사를 경계하고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

^{2)《}高麗史》 권 128. 列傳 41. 鄭仲夫.

³⁾ 閔丙河,《高麗武臣政權研究》(성균관대 출판부, 1990), 64쪽에 의하면, 문종 때 책정된 文臣數 532명, 東屬數 1,165명 이상 모두 합하여 總 文臣系列數 약 1,700명 이상의 규모 가운데서 武臣亂(金甫當의 反武臣亂 포함)으로 살해된 수는 주로 문신을 비롯하여 宦官을 포함 150명 내외가 된다고 한다.

고…함께 화를 면하였다(《高麗史》권 99, 列傳 12. 崔惟淸).

4. 忠直 또는 무신과 인척관계: 文克謙

文克謙은…거듭 벼슬이 올라 左正言인 되어 왕의 침전 앞문에 엎드려 상 소하기를 '审者 白善淵은 위세로 상벌을 한부로 하고 비밀로 궁녀 無比와 추 행을 하였고. 점장이 榮儀는 유교의 宗旨와는 어긋나는 左道로 임금에게 아 첨하여 百順·館北의 양궁을 두고 사사로이 재화를 간직하여 祝釐齋醮의 비 용으로 지출하되 (백)선연과 더불어 그 사무를 관장하였다. 무릇 양계의 兵 馬와 5도의 按察이 階辭하는 날에는 반드시 양궁에서 주연을 베풀고 위로하 여 전송하되 각기 방물을 바치도록 하였는데, 그 貢奉의 많고 적음에 따라 殿最를 하니 집집마다 추렴하여 백성의 원망을 부르게 하였고…'라 하였다. 왕은 크게 노하여 그 疏를 불살랐다. …드디어 黃州判官으로 떨어지게 되었 고…정중부의 난에 극격이 殿中省에서 숙직하다 변을 듣고 도망하여 숨었는 데 병사가 추적하여 잡으니 극겸이 말하기를 '나는 前正言인 문극겸이다. 임 금이 만약 나의 말을 좇았으면 어찌 오늘에 이르렀으리오. 원컨대 예리한 칼 로 나를 척결하라'하니 병사가 이상하게 여겨 잡아 여러 장수 앞에 이르니. 여러 장수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평소에 이름을 듣던 자이니 죽이지 말 라'하고 궁성에 가두었다. 문극겸은…집에 딸이 있었는데 義方의 아우 隣이 그녀에게 장가들었다. 이로 말미암아 계사의 난에 일족이 모두 면하였다 (《高麗史》 권 99, 列傳 12, 文克謙).

5. 惠政治民:李知命

李知命은…과거에 급제하여 黃州書記가 되었는데 관에 있으면서 청렴하고 굶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을 다하여 진휼하니 떠돌던 백성들이 아이를 업고 이르렀다. 후에 忠州判官이 되었으나 다스림이 황주에서와 같았다. 정중부의 난에 내외 문신이 숨어 도망하여도 용납할 곳이 없었는데, 충주사람들이 知命의 선정에 감사하여 보호함으로써 지명은 홀로 면하였다(《高麗史》권 99, 列傳 12, 李知命).

6. 무신에 의탁 또는 相善한 경우: 庾資諒·盧永淳

의종조에 문신이 크게 성하였는데 資諒이 나이 16세에 儒家 자제와 약정하여 계를 만들기로 하고 아울러 무인 吳光陟・文章弼을 함께 끌어들이려하니 모두 즐겨하지 않았다. 자량이 말하기를 '교유하는 가운데 문무가 구비됨이 좋지 않는가. 만약 이를 거절하면 뒤에 반드시 후회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니 여러 사람이 이를 좇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정중부가 난을 일으키니 계를 같이 한 자가 광척과 장필의 연고함에 힘입어 다 화를 면하였다(《高麗史》권 99, 列傳 12, 庾應圭 附 資諒).

정중부의 난에 호종하는 관리가 많이 해를 입었으나 永淳은 본래 무관출 신의 자제이며 또한 무신과 서로 좋아하였으므로 면하였다(《高麗史》권 100, 列傳 13, 盧永淳).

이처럼 화를 면하고 구명된 문신들은 그들의 입장과 성격에 따라 무신정 권에 각기 달리 대처하였다. 무신란 후 문신들의 동향은 크게 세 유형(隱居文 士·疎外文人·登用文臣)으로 구분된다.

(1) 은거문사

전술한 입산도피의 경우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무신란이 일어나자 신준과 오생은 虎口에서 몸을 빼어 佛門으로 들어갔다. 그리하여 儒者의 복식인 冠帶를 버리고 승려복인 가사를 입고서 무신정권에 좇지 않고 고결하게여생을 마쳤다. 신준과 오생은 《高麗史》에는 나타나지 않고 다만 《西河集》・《破閑集》・《檪翁稗說》등 문집이나 詩話類에 보일 뿐이다. 신준의 호는 白雲子로서 公州로 도피하였고,4) 오생은 伽倻山에 은둔하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의 명성은 세상에 떨쳤고 절조는 숭상의 대상이 되었다.5)

그런데 신준이 공주의 산장에서 지방의 郡守 자제들을 모아놓고 교육에 종사했다는 사실은 60 크게 주목해야 할 것이다. 고려 말의 명유 이제현과 충선왕의 대화내용은 그 사정을 짐작하게 한다.

또 묻기를 '우리 나라는 예전에는 문물이 중국과 같다고 하였는데, 지금은 학자들이 다 승려를 따라 다니며 章句나 익히어 彫蟲篆刻의 무리는 번성하고 경서에 밝고 덕행을 수양하는 선비는 매우 적으니 그 까닭은 무엇인가'라고 하셨다. 신이 대답하기를 '…그 뒤에 국가가 차츰 文敎의 정치를 다시 쓰게 되어선비들이 비록 배우기를 원하는 뜻이 있으나 도리어 쫓아가서 배울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깊은 산중에서 가사를 입고 숨어 사는 자를 발을 싸매고 멀리 찾아가서 강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臣이 생각하기에 학자들이 승려를 따라다니며 章句를 익히게 된 것은 그 근원이 대체로 여기에서 시작된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櫟翁稗說》前集 1).

즉 충선왕이 우리나라 학자(배우는 자)들이 사원의 승려를 찾아가 글을 익히는 관습이 언제부터이냐고 했을 때, 이제현은 무신란 후 화를 피해 山門으로 들어간 문사들이 그곳에서 학자(지방자제)들을 교육시켜 그것이 한 근원이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 지방자제들의 성분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아마도 신준의 경우와 같이 군수의 자제이거나 향리층의 자제일 것이다. 이 지방자제들은 계속 성장하여 중앙으로 진출하였고, 후일 士大夫 형성의주체가 되었으며 나아가 조선왕조 건국의 주동세력이 되었던 것이다.7)

^{4)《}破閑集》刊下, 白雲子棄儒冠,

^{5)《}西河集》 권 4, 寄伽倻山人悟生書.

^{6) 《}破閑集》 권 下.

⁷⁾ 李佑成, 앞의 책(1982), 192쪽.

儒冠을 버린 신준이나 오생과는 달리 난 초에 피신은 하였으나 끝까지 유관을 버리지 않고 지방에서 유학을 닦으며 처사생활로 일관했던 權敦禮와같은 문사도 있었다. 권돈례는 어사 출신이나《高麗史》열전에는 그 이름이없고, 朴仁碩의 墓誌에 보면 그의 字가 不華였음을 알 수 있다.8) 그는 原州에 은거하면서 門徒들을 길렀는데, 늘 문을 닫고 가르쳤으므로 제자들이 모여 들어 강습하는 소리가 공자의 고장을 연상케 할 정도였다.9)

권돈례는 끝내 세상에 나오지 않았으므로 林椿이 오생과 권돈례에게 보낸 서한에 의하면,100 당시 이재와 봉록에만 마음을 두고 명예와 이권에 유혹되는 俗儒들에게 그의 청명은 위의 오생과 함께 큰 모범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입산도피한 은거문사는 기록에 전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더 많았던 듯하니, 그것은 공양왕 3년(1391)에 成均生員 朴礎 등이 불교의 폐해를 논박한 다음의 상소문에서 잘 알 수 있다.

우리 국가가 경인·계사년 이전에는 通儒와 名士가 중국보다 많았기 때문에 唐에서 군자의 나라라고 하였으며 宋에서는 문물과 예약의 나라라고 하여 본국의 사신이 유숙하는 곳을 小中華의 館이라 하였습니다. 경인·계사년 이후에는 兵難에 죽지 않았으면 산림으로 도망하여 들어갔으므로 통유와 명사가 1백명에한 두 명도 남은 사람이 없었습니다(《高麗史節要》권 35, 공양왕 3년 6월).

庚癸亂 이후 문사들은 병란에 죽었거나 산림으로 들어갔으므로 통유와 명사로서 남은 사람이 별로 없었던 것이다. 통유와 명사는 곧 문사를 뜻하는 것으로 이 상소문에 의하여 무신란에서 살아 남은 문사들은 거의 입산도피하여 승려가 되거나 지방에 은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신준·오생·권돈례 이외에 현재 문집을 통하여 찾을 수 있는 은거문사로는 李仲若·朴仁碩·王若壽·皇甫若水·趙亦樂 등이 있다. 은거문사는 문헌의 발굴로 더 나타날 것이 기대되고 이들의 동향에 대하여도 앞으로 구체적인 연구가 있어야 하겠다.

결국 은거문사들은 유관을 버린 경우와 버리지 않은 차이는 있었으나 무 신정권과 타협을 거부하고 후학들을 가르치면서 맑고 고결한 입장을 고수했

^{8)〈}朴仁碩墓誌〉(《朝鮮金石總覽》上, 1919).

^{9)《}西河集》 권 4, 答權御史書.

^{10)《}西河集》 권 4, 寄伽倻山人悟生書 및 代李湛之奇權御史敦禮書.

던 지식층이었다고 할 수 있다.

(2) 소외문인

은거문사와는 달리 무신란 초에 피신하였다가 다시 開京으로 돌아와 仕宦 하려 했던 문인들이 있었다. 林椿·吳世才 등이 이 유형에 속하는데, 시문을 숭상했던 이들 문인은 당시 문단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¹¹⁾

임춘은 원래 개국공신의 후예로 살림이 넉넉하고 안정된 가문에서 성장하였다. 그러나 무신란이 일어나자 功蔭田을 京軍에게 모두 탈취당하고 그의일가는 화를 입었다. 그는 겨우 몸을 피하여 한때 영남지방을 유랑하기도 하였다. 그 후 개경으로 돌아와 생활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무신정권에 참여하고 있었던 문신들에게 관직에 등용시켜 줄 것을 간청하였으나 이루어지지않았다. 그는 마침내 고난과 실의에 빠지고 기아에 허덕이다가 일찍이 죽음으로써 불우한 일생을 마쳤다. 그가 죽은 후 崔瑀는 그의 문집인《西河集》에 跋文을 써 주었고 서적점에 명하여 널리 인쇄하여 반포하게 하였다.12)

오세재는 조부(吳學麟)가 翰林學士였고 두 형(世功·世文)은 문인으로 이름이나 있었다. 그는 의종대에 청년기를 보냈는데 과거에 응시하지 않아 재야의 문인으로 있었다. 무신란으로 國子監 大司成으로 있던 빙부 李知深이 피살되는 액운을 겪었고, 그 후 호구책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차례 과거에 응시하였다. 마침내 급제하여 仕宦의 길을 원했으나 등용되지 못하고 말았다. 오세재는 무신집권자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회적 신분도 보장받을 수 없었다. 결국 그는 비참한 모습으로 開京을 떠나 말년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13)

이처럼 임춘이나 오세재는 무신정권에서 소외되어 등용되지 않았으므로 《高麗史》에는 그 기록을 거의 찾을 수 없고 문집류에 나타나는 시문을 통 하여만 그들의 생애를 알 수 있을 뿐이다. 임춘과 오세재는 당대의 명시인들 이었는 바, 이들 문인의 정치편력에 대하여는 항을 달리하여 초기 무신정권 과 문신의 정치활동을 고찰할 때 재론할 것이다.

¹¹⁾ 朴菖熙, 앞의 글, 257쪽.

^{12)《}西河集》 권末, 崔瑀跋(高麗版).

^{13) 《}高麗史》 권 102, 列傳 15, 李仁老 附 吳世才.

요컨대 난 이후 소외되었던 문인들은 정권에 등용되지 못한 인물이었다. 곧 은거문사와 소외문인은 정계에서 은퇴한 계열로 볼 수 있다.

(3) 등용문신

문신의 셋째 유형으로는 무신란 이후에도 문신 지위의 유지가 그대로 허용되었거나 무신정권에 참여·협력했던 등용문신을 들 수 있다. 등용문신은 재등용된 경우와 신규로 등용된 문신으로 구분된다.

먼저 의종 때에 이미 관도에 진출해 있었거나 고위관직에 있던 문신들 중에서 덕망이 있거나 선정으로 백성을 다스렸던 인물이 있었음은 이미 앞에서 인용한 바 있다. 이들은 난 후 무신집권자들에게 인정을 받고 재등용되어 재상직에까지도 승진하였다. 이들 문신을 舊文臣이라 할 수 있는데, 文克謙이나 尹鱗瞻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리고 난 이후 과거에 급제하여 신규로 등용된 신진문신들도 있었다. 무신정권기를 대표할 수 있는 이인로와 이규보를 비롯한 대부분의 문신들이이 부류에 속한다. 무신란 후 일시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어 피신함으로써화를 면했던 이인로는 난이 진정된 후 과거를 통하여 무신정권에 등용되었다. 14) 또한 이규보는 명종 때에 문신으로서 현달할 것을 지향하였으나 몇 번의 좌절을 겪은 후 최씨정권에서 중용되어 마침내 재상에까지 올랐다. 15)

그리하여 등용문신들은 무신집권자들이 포섭하고 우대함에 따라 그들에게 결탁·아부하면서 무신정권에 진출하여 크게 활약하였다. 무신들이 문신을 등용한 것은, 양반제도의 유지를 위해 문반기구를 그대로 놔두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문신을 등용할 정치가 되어 있었고, 정치나 행정사무를 담당할 문신이 필요했으며, 그리고 문신의 대학살로 민심이 흉흉하게 동요되었으므로 이를 수습·안정시키기 위함이었다.16)

등용문신의 활동상과 그 성격에 대하여는 다음 항에서 자세히 살필 것이다. 등용문신은 말할 것도 없이 정계에 등장한 계열이라 할 수 있다.

^{14)《}高麗史》 권 102. 列傳 15. 李仁老.

^{15) 《}高麗史》 권 102, 列傳 15, 李奎報.

¹⁶⁾ 邊太燮、〈高麗後期의 武班에 대하여〉(《高麗政治制度史研究》,一潮閣、1971)、 407~408等。

2) 초기 무신정권과 문신의 정치활동

초기 무신정권기는 명종 원년(1171) 이의방의 정권탈취로부터 명종 26년 (1196) 최충헌이 이의민을 제거할 때까지로 무신정권의 성립기에 해당한다. 이 시기는 난에 참가한 무신들의 이해 관계가 정권욕과 결부되어 무신 상호간의 처참한 정권쟁탈전이 계속되었으므로, 장기적으로 어느 한 무신세력에 의한 안정된 집권이 불가능하였다.

그리하여 명종조 26년간에는 李義方(?~1174)—鄭仲夫(?~1178)—慶大升(1154~1183)—李義旼(?~1197) 등이 교대로 권력을 장악하고 정치를 주도하였 다. 무신란 직후 문신에 대해 보복적이었던 무신집권자들은 오래되지 않아 의종때에 관계에 진출해 있던 구문신들을 포섭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문신들은 무신란 이전처럼 관직을 모두 독점하지는 못하였으나, 무신들보다 관직을 많이 제수받았다.17)

무신정권에 포섭되어 등용된 문신들의 관직 제수 내용을 통해 실제 정치활동사항을 살펴 보기로 하겠다. 명종 즉위년(1170) 9월 문극겸의 批目에 의하여 단행된 문신들의 인사발령을 보면 다음과 같다.18)

任克忠……中書侍郎平章事 文克謙……右承宣・御史中永

¹⁷⁾ Edward J. Shultz, The Military—Civilian Conflict of the Koryo Dynasty, The Studies on Korea in Transition, 1979, p. 11에 보면, 의종조에서 최씨정 권기까지 中書門下省, 樞密院, 六部, 御史臺 소속의 관리와 知貢擧를 역임한 인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문신과 무인의 관직 제수 상황이 다음과 같은 표로 제시되었다.

區	分	毅 宗	明	宗	忠 獻	瑀	沆
			1170~75	1175~96	心、層入		
緫	計	96	53	77	77	90	35
文	臣	90(79%)	34(79%)	45(59%)	48(62%)	63(70%)	26(74%)
武	人	6(6%)	18(18%)	31(40%)	24(31%)	24(26%)	7(20%)
未	詳		1	1	5(6%)	3	2(6%)

^{18) 《}高麗史節要》 권 11, 의종 24년 9월.

224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문신

 庾應圭……工部郎中
 尹鱗膽……知樞密院事

 金莘尹……左諫議大夫
 李應招……左司諫大夫

 金甫當……右諫議大夫
 崔 讜……右正言

任克忠은 무신란 전에 翰林學士, 權密院事, 判尚書刑部事 등을 역임하였다. 그는 당시 인사에서 중서시랑평장사로 임명되었는데, 이는 정중부가 받은 參 知政事보다 높은 관직이었다.

文克謙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左正言으로 재직할 때 환관과 嬖臣의 부정을 논란·배척하여 그 충직함이 무장에게 알려졌던 까닭으로 화를 면하였고, 또한 집권세력과 인척관계를 맺어 그 일족이 모두 화를 면한 문신이었다. 명종이 즉위한 후 批目을 쓰게 된 殿中內給事 문극겸은 이의방의 추천으로 右承宣·御史中丞에 임명되었다. 그 후 그는 명종조에 修國史, 中書侍郎平章事, 判禮部事까지 승진하면서 안정된 지위를 누릴 수 있었다. 더욱이 문신으로서 최초로 상장군이 되었는데,19) 문신의 고위 무반직의 겸임은 정치적 실력자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였다.

庾應圭는 무신란 발생 때 閣門祗候로 재직한 인물이었는데, 명종 즉위 후 金에 告奏使로 파견되어 명종 옹립을 정당화시키는 큰 임무를 완수하였다. 그 후 그는 문신으로서의 궁지를 갖고 다른 문신들보다 의연하게 무신정권에 대처하였다. 유응규는 명종 때에 工部侍郎까지 승진하였다.20)

尹鱗瞻은 무신란 당시 60세로 知樞密院事에 임명되었으나, 權貴나 왕에게 간하는 말을 피하고 우유부단하게 처신하다가 군졸들에게 수모를 당하기도 하였다. 金甫當이 거병하였을 때 윤인첨은 재상이었으나 문신이라는 이유로 미천한 군졸에게 결박지어졌고, 鄭筠에 의해 이의방이 제거되었을 때에는 조위총토벌군의 원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군졸들에게 의심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를 보전하는데 힘써 명종 때에 守太師門下侍郎까지 올라갈 수 있었고 무반직인 상장군을 겸대하였다.21)

金莘尹은 左諫議로서 右諫義 李應招・左司諫 金甫當・右正言 崔讜 등 젊은

^{19)《}高麗史》 권 103, 列傳 16, 崔冲.

^{20) 《}高麗史》 권 99. 列傳 12. 庾應圭.

^{21) 《}高麗史節要》 권 12, 명종 원년 9월.

문신들과 함께 상소하여 의종 때 환관의 告身에 대한 탄핵을 요구하고 이의방의 형인 承宣 李俊儀와 이의방과 인척관계였던 문극겸의 臺省職 겸직의 해임을 요구한 바 있다. 이는 이의방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어, 김신윤은 隍城에 갇히고 判大府事로 좌천되었다.²²⁾ 그는 무신란때 開京에 일어난 유혈사태를 개탄하기도 하였으나²³⁾ 난 직후 등용되어 관직을 맡고 同知真擧로서도 활동하였다.

이응초도 김신윤과의 상소사건으로 좌사간대부에서 禮部員外郎으로 좌천 되었다. 그 후 정중부집권기인 명종 8년(1178) 우간의대부로서 동지공거가 되 었고, 경대승집권기인 명종 10년(1180)에는 지추밀원사가 되었다.

김보당은 난 후 우간의대부가 되었으나 위의 상소사건으로 공부시랑으로 좌천되었다. 그러나 곧 복직이 된 것으로 보아 무신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것 같다. 그 후 명종 3년(1173) 김보당은 동북면병마사·간의대부로서 무신정권의 타도와 의종복위를 표방하면서 거병하였다. 그는 무신정권에 등용되어 활동하였으나 무신에 반감이 쌓여 정치성을 띤 反武臣亂을 일으켰다.²⁴⁾ 당시문신들의 무신에 대한 반항이 상당히 컸음을 알 수 있다.

崔讜은 덕망 높은 문사였던 崔惟淸의 아들로 우정언에 등용되었으나 역시 상소사건으로 한때 전중내급사로 좌천되었다. 그러나 다시 吏部員外郞이 되었고 관직이 여러 차례 승진되어 명종조에 참지정사까지 승진하였다.²⁵⁾

또한 무신란 때 화를 면하였던 문신들도 재등용되어 크게 활동하였다. 최유청은 昌原郡人으로 그의 6세조는 태조공신이었으며 부친은 守太保門下侍郎 同中書門下平章 判吏・禮部事를 지낸 귀족가문 출신이었다. 그는 무신란당시 75세의 고령이었으나 평소에 덕망이 있었으므로 명종 즉위 후에도 중서시랑의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였고, 그 후 守司空 集賢殿大學士 判禮部事를지내고 물러났다.

이지명은 난 전에 황주서기와 충주판관을 역임하면서 선정을 베푼데 대해 감사해 하는 지방민들의 보호로 구면된 문신이었다. 그 후 尚書右丞이 되었 고 이어 정당문학이 되었다.

^{22) 《}高麗史》 권 96. 列傳 9. 尹瓘 附 鱗瞻.

^{23)《}東文選》 권 19. 庚寅 重九.

²⁴⁾ 邊太燮,〈武臣政權期의 反武臣亂의 性格-金甫當의 亂과 趙位寵의 亂을 中心 으로ー〉(《韓國史研究》19, 1978).

^{25) 《}高麗史》 권 99, 列傳 12, 崔惟清 附 讜.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무신란 후 문신들은 宰樞兩府로부터 6부·대성직 등 중요 관직에 임명되었다. 이처럼 문신들이 고위관직을 제수받아 등용될 수 있었다는 것은 무엇보다 그들의 정치능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많은 문신이 무신정권에 등용되었으나, 초기 무신정권기는 정권이 확립되지 않았으므로 문신들은 무신들에게 의심과 경계의 대상이었고 심한 압박과 견제를 받았다. 이러한 문신 탄압의 현상은 명종조는 말할 것도 없고 고종조에 이르기까지 起伏은 있었을 망정 꾸준히 계속되었던 것이다.26) 따라서 문신들의 정치활동은 위축되어 많은 제약이 따랐던 것이다. 당시의 형국이 이와 같았음은 윤인첨의 사례에서 잘 알 수 있다.

정중부의 난부터 문신은 기운을 잃게되어 鱗膽이 무신과 더불어 일을 같이 함에 늘 견제되어 스스로를 보전할 따름이었다(《高麗史》권 96, 列傳 9, 尹瓘附 鱗瞻).

즉 문신들은 정사에 있어서 항상 무신들에게 견제되어 기를 펴지 못하고 스스로 몸을 보전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의기를 잃을 수밖에 없었다.

한편 문신들의 사기가 위축되었던 것은 출사로의 축소에서도 살필 수 있다. 명종 원년 이의방이 집권한 후 무신세력이 확대되면서 문신의 출사로였던 외직에 무신이 임용되었는데,²⁷⁾ 이는 문신들의 출사로가 축소된 반면 무신들의 宦路의 폭이 확대된 것을 뜻한다. 또 명종 5년(1175)에는 이의방에서 정중부로 집권세력이 바뀌었지만 외직에 武散官을 채움으로써²⁸⁾ 문신들의 출사로는 더욱 축소되었다. 문신들의 사기가 위축되었을 것임은 당연하다.

그러나 경대승집권기에 오면 그간 계속되었던 문신 탄압의 현상이 사라지게 되었다. 반정중부세력이었던 경대승은 문신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온건한 인물로서 유학을 존중하고 문신에 대해 비교적 호의적이었다. 이 기간에 주목되는 것은 지금까지 정권에서 소외되었거나 외면당하였던 문인들이 점차 과거에 응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科試에 대하여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던 임춘이 과거를 통해 생활의 방도를 찾으려 하였고,²⁹⁾ 뛰어난 글재주를

²⁶⁾ 邊太燮, 앞의 글(1971), 400~401・413쪽.

^{27) 《}高麗史》 권 75, 志 29, 選擧 3, 銓注 凡選用.

²⁸⁾ 위와 같음.

지녔던 오세재는 낙방을 거듭하다가 명종 12년 50세의 나이로 겨우 과거에 급제하였다.30) 또한 이인로도 명종 10년 과거에서 29세로 장원급제를 하였는데,31) 이와 같은 사실은 이전보다 나아진 문신들의 상황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추세는 이의민의 집권기에 접어들자 다시 반전되었다. 이의민은 무신란에 적극 가담하여 행동한 인물로 스스로의 신분적 열세를 극복하면서 파격적으로 실력에 의해 출세하였다. 그는 이전의 집권자인 이의방·정중 부·경대승보다 출신성분이 더 하층인 천민출신(寺婢의 아들로 태어났음)이었 으므로 무력에만 의존하여 집권하였을 것이다.32) 따라서 문신들에 대한 대우 는 냉혹하였을 것이다.

임춘은 신병으로 과거를 포기하여33) 사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명종 17년(1187) 무렵에 빈궁 속에서 30대에 요절하였다.《西河集》이란 遺文集을 남긴 임춘의 죽음은 문인들의 수난을 의미하며, 이인로가 제문을 짓고 이규보가 그를 추도한 것도 문인에 대한 슬픔 때문이었다. 과거에 급제한 오세재는 사환을 원하여34) 자신과 이인로 등의 천거·진정의 글을 올렸으나 끝내 입사가 좌절되었다. 그는 55세에 東京(慶州)에서 살다가 임춘이 사망한 비슷한시기에 비참하게 객사하고 말았다. 오세재가 등용되지 못한 것은35) 사회 현실에 대한 그의 날카로운 비판의식이 집권층에게 용납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무신정권에 추종하던 문신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이인로도 장원 급제하여 翰官으로 입사하였으나 집권층의 푸대접으로 명종 말까지 14년간 같은 관직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이인로는 출세를 하지 못했을 뿐이며 임춘이나 오세재와는 달리 안정된 생활은 할 수 있었다. 대체로볼 때 이의민집권기는 무신들에게 시련기요 압혹기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치세태 때문에 명종 14년 무렵 임춘·오세재·이인로 등이 주축

^{29)《}東文選》 권 59, 與皇甫若水書.

^{30)《}破閑集》 권, 下.

³¹⁾ 위와 같음.

³²⁾ 金塘澤、〈李義旼政權의 性格〉(《歷史學報》83, 1979) 참조.

^{33) 《}東文選》 권 13. 病中有感 및 권 59. 與趙亦樂書.

^{34)《}東文選》 권 116, 吳先生德全哀詞幷序.

⁽東文選》 권 102, 吳德全載巖詩跋尾.《高麗史》 권 102, 列傳 15, 李仁老 附 吳世才.

이 된 '竹林七賢'이 등장하여 현실도피적인 은거생활의 풍조가 나타나게 되었다. 요컨대 이의민집권기에는 문신에 대한 견제가 다시 계속되어 문신의 사기는 가라앉고 말았던 것이다.

이상으로 초기 무신정권기에도 문신들이 무신보다 많이 관직을 제수받고 등용되었으나, 항상 무신들의 견제와 탄압으로 문신들의 정치활동은 위축된 상태가 계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金毅圭〉

3. 최씨정권과 문신

1) 최씨정권의 문신정책

명종 26년(1196) 4월 최충헌(1150~1219)은 이의민을 축출하고 정권을 장악한 후 아들 瑀(?~1249), 손자 沆(?~1257), 증손 竩(?~1258)에 거치는 4대 60 여 년간 권력을 세습함으로써 전형적인 무신정치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최씨 정권기에는 무신정권의 확립을 보게 되었다.

명종 말기에 오면 무신란 발생으로부터 초기 무신정권기에 생존하였던 많은 문신과 무신들이 죽었다. 무신란에 가담했던 세대가 거의 물러난 시점에서 등장한 최충현도 무신란에 참여하지 않았던 인물이다.1) 그런데 최충현은 단순한 무장이라기 보다는 정치가로서의 역량을 구비했던 인물이라 할 수있다. 그것은 최충현이 집권한 후 명종 27년(1197) 5월에 上書한「封事10條」2)에서 당시 고려사회가 당면한 정치상황을 비교적 정확히 진단하고 새로운 정책의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알 수 있다.

門蔭으로 관도에 진출한³⁾ 최충헌은 본래 文吏출신이었으므로 문학에 대한 식견과 문신들과의 친분유대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집권과정에서 무신들을

¹⁾ 金塘澤,〈李義旼政權의 性格〉(《歷史學報》83, 1979), 46쪽.

^{2) 《}高麗史》 권 129. 列傳 42. 叛逆 3. 崔忠獻.

^{3)〈}崔忠獻墓誌銘〉(《朝鮮金石總覽》上,朝鮮總督府,1919).

다수 살해하거나 유배시켰으나 문신들은 소수의 숙청으로 그쳤다. 최충헌이 소수의 문신만을 제거했다는 사실은 문신이 정치적인 주도권을 장악하지 못했으므로 최충헌정권을 위태롭게 할 소지가 적었다는 것을 알려 주는 것이다. 그렇지만 무력으로 권력을 잡은 최충헌은 문신들에 대한 회유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문신들을 포섭하고 탄력성있는 정치운용을 도모하면서 새로운 정권을 구축해 나갔던 것이다. 이와 같은 정국의 전환은 명종조무신정권과는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 지난날 정권으로부터 냉대받아 오던 문신들로부터 크게 환영을 받았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문신을 견제하기 보다는 오히려 문신을 우대하는 역현상이 나타났던 것이다. 이처럼 문신이 우대를 받고 점차 중용됨에 따라 무신이 도리어 억압받기에 이르렀다.4) 최충헌이 집권한 후 첫 인사발령5)에 이어 명종 27년(1197) 12월에 시행된 두 번째 인사발령6)에서 등용된 문신들은 다음과 같다.

趙永仁……守太師門下侍郞平章事判吏部事

崔 讜……中書侍郞平章事

任 濡……中書侍郞平章事

崔 詵……知樞密院事

于述儒……左僕射

이들 문신에 대하여 검토해 보면 문신등용의 배경을 살필 수 있다.

趙永仁은 의종조에 급제하여 全州書記를 지낸 후 명종조에 참지정사·정당문학을 역임하였고, 첫 인사발령 때에는 문신으로서 유일하게 判吏部事로임명되었다. 이 때 인사에서 문하시랑평장사가 된 그는 최충수와는 사돈관계였고 신종 옹립에 공을 세우기도 하였다. 그는 정권과 밀착하여 마침내 문하시중까지 승진하였으며 神宗廟庭에 배향되었다.7)

任濡는 여러 대에 걸쳐 재상을 배출한 가문의 후예로서 명종조에 등제하였고 참지정사가 되었다. 최씨가문과는 이중의 혼인관계를 맺었고, 희종을 폐하고 漢南公 貞을 강종으로 옹립할 때 최충헌에게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이번 인사에 중서시랑평장사로 임명되었다가 문하시랑평장사가 되었으며 康

⁴⁾ 邊太燮,〈高麗後期의 武班에 대하여〉(《高麗政治制度史研究》,一潮閣, 1971), 407~408等。

^{5) 《}高麗史節要》권 13, 명종 27년 9월.

^{6) 《}高麗史》권 20, 世家 20, 명종 27년 12월.

^{7) 《}高麗史》 권 99, 列傳 12, 趙永仁.

宗廟庭에 배향되었다.8)

崔讜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무신란 직후 우정언으로 임명된 후 승진을 거듭하다가, 이 때 인사에서는 중서시랑평장사에 임명되었고 門下侍郎同中書平章事가 된 다음 곧 물러났다. 于述儒는 명종조에 등제하였고 이 때 인사에 좌복야에 임명되었으나 곧 그만두었다. 崔詵은 최유청의 아들이었으므로 崔讜과 마찬가지로 무신들과 밀착될 소지를 지닌 인물이었다. 더욱이 최선은 20년 전부터 최충헌과 교분을 맺고 있었다. 즉 최충헌이 28세 때인 명종 6년 知安東府事副使로 있었을 때 최선이 이 지역의 察訪使였으므로 친분이 성립되었던 것이다. 9 이번 인사에 지추밀원사에 임명되었고 신종을 폐하고 희종을 옹립할 때 큰 역할을 하였다. 그후 門下侍郎 同中書平章事까지 승진하였으며 熙宗廟庭에 배향되었다.

이처럼 인사발령으로 등용된 문신들을 검토해 볼 때, 최충헌은 집권하기전에 비교적 좋은 가문 배경을 지닌 문신들과 교섭을 가졌고 이들 고위문신들이 측근으로 들어섰음을 확인할 수 있다. 최충헌은 친분관계를 가졌던 문신들을 고위관직에 등용하였고, 이들은 최충헌정권에 깊이 간여하여 신왕 옹립과 같은 일에 적극 협력하였던 것이다. 최충헌은 비단 등용문신들에게 뿐아니라 정권에서 외면당하고 있던 문인들에게도 관직을 제수하였다. 즉'竹林七賢'이었던 이인로는 翰林, 李湛之는 留院, 咸淳은 司直이 되었다.10)

그러면 문신이 최씨정권에 발탁·등용되는 과정과 집권자의 의도를 결부시켜 문신우대정책의 실상을 고찰하여 보기로 한다. 최씨정권에 발탁된 문신들은 모두 과거 합격자였다. 그런데 이들 문신은 반드시 최씨정권과 밀착된측근문신의 천거가 있어야만 발탁되었고, 琴儀·李奎報·崔滋 등은 그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과거에 여러 차례 떨어지다가 명종 14년에 급제한 금의는 삼한공신의 후 예였지만 그의 가문은 별로 떨치지 못하였다. 최충헌이 집권하면서 문사를 구할 때 그는 李宗揆에 의해 천거되어 발탁되었다. 그 후 금의는 최충헌에게

^{8)《}高麗史》 권 95. 列傳 8. 任懿 附 濡.

^{9)《}崔忠獻墓誌銘〉(《朝鮮金石總覽》上).朴喜熙、〈崔忠獻小考〉(《史學志》3, 1969), 107等.

^{10)《}補閑集》 권中, 己未仲夏.

아첨하여 華要職을 역임하였다.¹¹⁾ 그는 마침내 최충헌의 가장 신임받는 측근 무신이 되었다.

명종 20년에 급제한 이규보는 오랫 동안 관직에 나아가지 못하다가 조영인·임유·최당·최선 등 재상에 의해 천거되었다. 그러나 불평하는 자들의방해로 사환이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10년이 지난 신종 2년(1199)에 全州司錄에 始補되었다.12) 그것은 이규보가 이인로·이담지·함순 등과 함께 최충현의 저택에 초청받아 祝壽의 시〈千葉榴花〉를 지은 것이 계기가 되었다.13)또 희종 3년(1207) 이규보는 최충헌이 새로 마련한 정자 茅亭에서 지은 기문14)이 제일로 뽑힘으로써 直翰林에 들게 되었다. 그 후 고종 초에도 참직을 구하는 시를 짓고 스스로를 천거하여 최충헌에게 또 다시 발탁되기에 이르렀다. 이규보는 최충헌·최우 부자 2대에 걸쳐 집권자에게 각별한 배려를 받으면서 만년에는 재상이 되어 당대의 영화를 누렸다.

崔冲의 후예인 최자는 강종조에 등제하였는데 國學 學諭로 있을 때 이규보의 천거로 최우에게 발탁되었다. 그는 文翰을 담당했던 이규보의 후계자로 뽑혀 최우에게 주목되어 文柄을 승계하였고 마침내 정언에 이르렀다.15) 이처럼 금의·이규보·최자 등 과거에 합격한 문신들은 출신에 관계없이 최씨정 권과 밀착된 측근문신들의 천거로 발탁되어 출세가 보장되었던 것이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최충헌은 집권하자 문사를 구하였다. 최우도 마찬가지로 문사를 구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최우가 구한 문사는 주로 寒土로, 최우는 이들을 발탁하여 인망을 얻었던 것이다.16) 그런데 최우가 한사로 발탁한 문신들의 가문은 대체로 한미하였으나 문장은 탁월한 인물들이었다.17) 그리고 한미한 가문출신의 과거합격자가 최씨정권에 발탁되려면 그들의 座主(知貢擧・同知貢擧)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최씨정권기의좌주들은 최씨와 친밀한 측근문신이었기 때문이다.

희종 4년 우부승선 금의가 동지공거로서 皇甫瓘 등을 뽑자 최충헌 부자는

^{11) 《}高麗史》 권 102, 列傳 15, 琴儀.

^{12) 《}高麗史》 권 102, 列傳 15, 李奎報.

^{13)《}東國李相國集》 권 9, 謝知奏事相公見 喚命賦千葉榴花 幷序.

^{14)《}東國李相國集》刊 23. 晉康候茅亭記.

^{15)《}高麗史》 권 102, 列傳 15, 崔滋.

^{16) 《}高麗史》 권 129, 列傳 42, 崔忠獻 附 怡.

¹⁷⁾ 金塘澤、〈崔氏政權과 文臣〉(《高麗武人政權研究》、 새문사、 1987)、 106~108쪽、

이들을 후하게 대접하고 왕도 이들에게 특혜를 베풀었다.¹⁸⁾ 이는 말할 것도 없이 이 科試의 동지공거가 최충헌이 신뢰하는 금의였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최씨를 중심으로 恩門・門生의 상하관계의 계열화가 강화되었던 것이다.19) 실제로 최충헌정권기의 과거에서 좌주는 任濡・崔詵・李桂長・琴儀・崔洪胤 등이 주축이 되었는데,20) 이들은 최충헌의 측근 문신이었다. 그리고 과시를 담당하였던 좌주인 금의와 최홍윤은 함께 정승이 되었고 특히 문생이 많기로 유명하였던 금의는 여러 번 과거를 관장하였으므로 물러난후 축하연 때 많은 문신이 경하하여 감탄하였다고 한다.21) 또한 금의는 훌륭한 인재를 많이 골라썼다. 翰林曲에 보이는 '琴學士'란 바로 그를 가리킨다.22) 좌주와 문생은 매우 가까웠을 뿐 아니라 정치적 유대를 지닌 엄격한상하관계를 평생 지속하였다.23) 또 좌주들은 문생의 문하에서 나온 문생을볼 수 있게 되었으므로,24) 최씨정권이 60년간 지속하는데 이들 문신이 구축한 인맥은 큰 비중을 차지하였을 것이다.

또한 최우는 백관의 전주를 담당할 政房을 그의 사저에 설치하고 이곳에 문사들을 소속시켰으므로²⁵⁾ 문신세력이 성장하는 기반이 되었다. 정방은 문객 중의 명유들로 조직하여 교대로 숙위케 할 書房²⁶⁾의 존재와 함께 최씨정권의 對文臣政策의 중요한 단면을 알려주는 것이다.

요컨대 문사를 구하고 한사를 발탁한 최씨집권자들은 이들 문신들을 측근으로 기용·장악하여 문무양반의 지배자로서 정권을 장기간 유지하고 권력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었다. 결국 최씨정권기의 문신에 대한 우대정책은 문신들에게 정치·사회적인 진출을 보장하면서 그들을 정권에 예속시키려는 고도의용인술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최우가 설치한 정방과 서

^{18) 《}高麗史》 권 102, 列傳 15, 琴儀.

¹⁹⁾ 朴菖熙. 〈武臣政權時代의 文人〉(《한국사》7, 국사편찬위원회, 1973), 283쪽.

^{20) 《}高麗史》권 73, 志 27, 選擧 1, 科目 1 選場 명종 20년~고종 3년. 張叔卿, 〈高麗武人政權下의 文士의 動態와 性格〉(《韓國史研究》34, 1981), 81 쪽의 〈表 3〉최충헌집권기의 과거합격자 일람 참조.

^{21)《}補閑集》권 上.

^{22) 《}高麗史》 권 102, 列傳 15, 琴儀.

²³⁾ 曺佐鎬、〈麗代의 科擧制度〉(《歷史學報》10, 1958), 162\.

^{24)《}補閑集》권 下.

^{25)《}高麗史》 권 129, 列傳 42, 崔忠獻 附 怡.

²⁶⁾ 위와 같음.

방도 문신정책의 일화이었다.

최씨정권의 문신우대정책으로 문신들은 관직을 얻어 각각 주어진 위치에서 국정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무신정권을 보좌하는데 지나지 않았고 최씨정권의 지지가 전제되었으므로 문신들은 무신세력과 결탁할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최씨집권이 장기화되자, 문신들은 정권에 대한 태도를 바꾸어 그들의 지위를 유지하고 생활안정의 보장만을 바라게 되었다. 이에 따라 초기 무신정권기의 비판의식은 사라지고 현실에의 영합과 적응이 생리화되어 최씨정권과 타협하고 집권세력에 아부하면서 정치활동에 종사하였다.

초기 무신정권기에 충직하여 화를 면하였던 문극겸은 집권세력에 등용되어 정치활동을 하였던 문신이다. 그는 당시 어진 재상으로 일컬어졌으나 권세가의 간청을 듣자 어짊과 어리석음을 살피지 않아 전주에 어긋남이 많았다. 또한 어린 자제들을 벼슬시키고 종을 나누어 보내 전원을 넓혀 잡았으므로 당시의 여론은 애석하게 여겼다 한다.²⁷⁾ 이처럼 문극겸은 집권자의 청탁에 협력·순종하면서 관리의 인사처리에 잘못된 점이 많았던 것이다.

최씨정권기에 들면서 무신세력에 아첨하여 결탁하였던 문신의 像은 금의와이규보의 행적에서 엿볼 수 있다. 금의가 최충헌에게 발탁되어 가장 신임반는 측근문신이 되어 華要職을 역임하였음은 이미 살핀 바와 같다. 그러나 그는 신종 때 많은 문신이 있는 자리에서도 말 앞에 서서 최충헌에게 이야기를 하였고,²⁸⁾ 고종 2년(1215) 최충헌이 別第로 옮겨 갈 때에 이전에는 재상으로서따라가는 자가 없었는데, 簽書樞密院事로 호위병과 함께 처음으로 따라갔다.²⁹⁾이처럼 금의는 사람들이 비루하다고 여길 정도로 무신집권자에게 극도의 아침을 하였다. 이윽고 금의가 권세를 믿고 교만하고 방자한 행동을 취하면서 집권자에게 아부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문생에게 야유를 받기도 하였다. 즉 희종 4년(1208) 우부승선 금의에게 과거에서 뽑힌 황보관은 금의로 얼미암아섬으로 유배되었고 세론은 이것을 야박하게 여겼던 것이다.³⁰⁾ 또한 고종 초에

^{27)《}高麗史》 권 99. 列傳 12. 文克謙.

^{28) 《}高麗史節要》권 14, 고종 2년 5월.

^{29)《}高麗史》 권 129, 列傳 42, 崔忠獻.

^{30) 《}高麗史》 권 102, 列傳 15, 琴儀.

翰林承旨로 있던 금의는 觀碁詩 40여 韻을 고열하면서도 집권자의 비위를 거슬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충헌에게 사랑받는 문객이었던 이규보의 시를 으뜸이 되게 하였다.31)

무신정권기를 대표하는 문신은 이규보였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어려서부터 문장으로 이름이 있었으나 불우와 실의 속에 天摩山에 우거하면서 스스로 白雲居士라 이름하였다. 20대 초에는 임춘·오세재·이인로 등 '竹林七賢'과 사귀면서 음주 속에서 放達하여 비관적 기개가 강렬하였다. 방달이란 언행이 기존 권위와 인습에 구애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그 후 이규보는 22세에 司馬試에 수석으로 합격하고 23세에는 禮部試에 합격하여 환로에 나가기를 열망하였다. 최씨정권기에 이르러 그는 최충헌에게 발탁되어 입신양명을 성취해 나갈 수 있었다. 이규보는 관직이 계속 승진함에 따라 무신정권에 예속되어 갔고 현실비판의 자세는 점차 둔화되었다.

그리하여 이규보는 최충헌이 주최하는 詩會에서 집권자에게 아부하기 시작하였다. 신종 3년 이규보는 축수의 현시를 통해 최충헌을 절대적인 국가공로자로서 숭배하였고, 희종 3년의 茅亭記에서는 최충헌을 위력이 있고 존경해 마지않는 지도자로 찬양하였다.32) 또한 이규보는 최우도 칭송하고 그의시책에 적극 추종하면서 아부하였다. 즉 최우를 위해 지은 十字閱의 기문에서 최우의 공렬이 빛나 일월과 더불어 광명을 다툰다고 하였다.33) 고종 19년 (1232) 대다수 관리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단행된 강화천도가 정권의 건재를위한 현명하고 다행스런 결단으로 여겨 최우를 국가 수호의 공로자로 찬양하는 시를 지었다.34) 그리고 이규보는 불교기반을 통한 백성들의 단합을 꾀해 대몽항쟁을 지속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에서 大藏經의 조판을35) 옹호하였다. 그리하여 불교의 신통력으로 몽고의 병화를 물리쳐 국가의 평안을 간구하는 글을 지음으로써36) 최우정권을 두둔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이규보가 최씨정권에 적극 아부하게 된 것은 文名을 영구히 유지

^{31) 《}高麗史》 권 96, 列傳 9, 尹瓘 附 世儒.

³²⁾ 朴菖熙,〈李奎報의 본질에 대한 연구 Ⅱ〉(《外大史學》2, 1989), 6~7쪽.

^{33)《}東國李相國集》 권24. 崔承制十字閣記.

^{34)《}東國李相國集》 권 18, 望海因追慶遷都.

³⁵⁾ 閔賢九、〈高麗의 對蒙抗爭과 大藏經〉(《韓國學論叢》1. 국민대. 1978).

^{36)《}東國李相國集》 권25, 大藏刻板君臣祈告文.

하고 가문의 영달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였기 때문일 것이다.37) 이규보를 비롯하여 당시 대부분의 문신들은 입신출세의 집념 때문에 무신집 권자에게 아부하였을 것이다. 최씨정권에 아부하였던 금의와 이규보는 '영국 의 집권자 크롬웰에 대한 시인 밀턴'으로 비유되기도 한다.38)

요컨대 많은 문신들이 무신정권에 추종하고 아부하면서 그들의 활로를 개 척하였으므로 문신들은 마침내 무신집권자의 충실한 예속적 굴종자가 되고 말았다.³⁹⁾

2) 최씨정권하 문신의 역할과 정치적 지위

최씨정권기의 문신정책으로 문신에 대한 관용의 길이 열리고 측근인물로 부상되면서 문신들은 최씨정권의 유지를 위한 여러 역할을 수행하였다. 즉 무신정권의 합리화와 무신들의 사회적 지위를 높임에 크게 기여하였고, 정치 적 활동을 통해 공헌하였다.

먼저 문신들이 최씨정권의 합리화와 정당화에 기여하여 무신세력과 밀착하게 된 것을, 문신의 역할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최씨정권 이전인 초기 무신정권기에도 정권의 합리화를 위해 문신들이 기여했음은 앞서 잠시 언급한 庾應圭의 활동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유응규는 명종이 즉위하자 告奏를 위해 숲에 갔다. 그런데 金帝가 왕위의 禪位를 의심하자 7일간 단식함으로써 드디어 回詔를 받아오는 큰 공을 세웠던 것이다. 40) 의종의 폐위와 명종의 즉위는 정중부에 의해 자행되었는데,41) 이는 정권의부당성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이다. 아마도 유응규는 명종의 즉위가 의종의 內禪에 의한 것이었음을 강조했을 것이다.

최씨정권기에 들어와서 문신들이 정권의 합리화에 기여한 것은 趙永仁· 金鳳毛·朴暄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다.

³⁷⁾ 朴菖熙, 앞의 글(1973), 289쪽.

³⁸⁾ 李丙燾、《韓國史》中世篇(乙酉文化社, 1961), 520쪽,

³⁹⁾ 朴菖熙, 앞의 글(1989), 24쪽.

^{40) 《}高麗史》 권 99, 列傳 12, 庾應圭.

^{41) 《}高麗史》 권 100, 列傳 13, 洪仲方.

최충헌이 집권한 후 문하시랑평장사로 임명된 조영인은 신종 옹립에 따른 난관을 해결함에 큰 역할을 하였다. 명종의 폐위와 신종의 즉위에 의심을 품은 금이 사신을 파견하여 전왕이 왕위를 사양한 일을 힐문하고 명종에게 친히 조칙을 전할 것을 주장하자, 임기응변으로 이 사태를 모면하였던 것이다.42) 만일 최충헌이 자행한 遜位의 실상이 드러나면 최씨정권의 부당성이 밝혀질 것이었지만 조영인은 최충헌정권의 정당성을 위해 헌신하였다.

김봉모도 신종 옹립에 공을 세웠다. 조부(北面都監判官)와 아버지(守司空左僕射)가 현달하지 못하였던 김봉모는 명종의 퇴위에 관해 조사하러 온 금의 사신을 접대하였다. 그는 능숙하게 외국어(異域方言俗語)를 구사하면서 사신을 적절히 무마하는데 성공하였으므로 조정에서 그를 중하게 여겼던 것이다.43) 그 후 그는 추밀원부사를 거쳐 참지정사에 이르렀다.44) 김봉모도 최충헌정권의 정당화를 위해 기여하였던 것이다.

박훤은 최우의 가신으로 史館의 수찬관이 되어 최우의 공적을 허황되게 과장하여 《功業錄》 5·6권을 편집하였다.45) 말하자면 최우를 역사적으로 미화함으로써 최우정권을 합리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문신들은 최씨정권의 옹호와 역사적인 미화를 통해 정권의 합리화와 정당화를 위한 작업에적극 가담하여 집권자에 접근하였다.

다음으로 문신들의 역할에서 최씨정권의 정치적·사회적 지위를 높임에 기여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즉 문신들은 최씨가문과 통혼함으로써 자신의 위치를 높이려는 최씨집권층의 의도에 따랐던 것이다. 그리하여 최씨집권자들은 최충헌정권 초기 또는 그 이전에 재상을 역임한 문신가문과 혼인하게 되었다. 이것은 비록 무신들이 정권을 장악했다 하더라도 전통적인 신분관념이 중시되고 문벌에 대한 강한 집착이 온존했기 때문이다.46)

최씨정권 이전에도 문신들은 무신과 통혼한 적이 있었다. 의종조에 문하시 중 王冲의 아들인 王桂는 정중부의 딸과 혼인하였다. 이로 인해 무신란 때 왕

^{42) 《}高麗史》 권 21, 世家 21, 신종 원년 6월.

^{43)〈}金鳳毛墓誌銘〉(《朝鮮金石總覽》上).

^{44)《}高麗史》 권 101, 列傳 14, 金台瑞.

^{45)《}高麗史》 권 125, 列傳 38, 朴暄.

⁴⁶⁾ 金塘澤, 앞의 글(1987), 103쪽.

계는 목숨을 보전할 수 있었고, 최충헌집권 후 참지정사를 거쳐 문하시랑 동 중서평장사에 승진하였다.⁴⁷⁾ 그리고 문극겸의 딸이 이의방의 아우인 李隣의 처가 됨으로써 문신과 무신이 사돈이 된 예도 있었음은 이미 살핀 바와 같다.

최씨정권기에 이르면 최씨가와 통혼하는 문신의 사례가 매우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최충헌집권 초부터 크게 활약하고 정권의 정당성을 위해 헌신한 바 있는 조영인의 아들 趙準은 최충수의 사위가 되었다. 48) 조영인은 최충수의 딸을 며느리로 맞아들인 것이다. 이로써 최씨집권층은 명문인 조영인가문과 인척을 맺어 신분적 지위를 높일 수 있었다. 동시에 조준이 최충헌집권직후인 명종 26년(1196) 4월에 權判吏部事에 임명된 것을 비롯하여 그 후 우간의대부와 우승선을 역임한 것도 양가의 통혼과 무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최충헌이 가장 신임하던 측근 문신이었던 임유의 형 任溥는 그 딸을 최충헌의 재취로 들임으로써 최충헌의 처숙이 되었다. 또한 임유의 아들 任孝明은 최충헌의 딸과 혼인함으로써⁴⁹⁾ 최충헌과 이번에는 사돈이 되었다. 임유의 조부 任懿는 숙종조에 문하시랑평장사를 지냈고, 아버지 任元厚는 의종조에 문하시중에 이르렀다. 최충헌이 이처럼 대대로 재상가문이었던 임유와 이중으로 통혼한 것은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를 높여 보려는 의도 때문이었다고 볼 수있다. 그 후 임유의 세 아들(景肅・景謙・孝順)도 재상이 될 수 있었다.50)

또한 최충헌이 집권하기 전부터 친분이 두터웠던 문하시랑 崔詵의 아들崔 宗峻은 최우를 조카사위로 맞이하였다.51) 최종준은 문하시중에 이르고 다시 그의 아들들(崔且・崔坪)도 재상이 되었다.52) 최씨가문이 이처럼 번창한이유 는 최씨집권자와 통혼한 것이 크게 작용하였기 때문이었다. 뿐만 아니라 최종준이 그의 손녀를 최항에게 출가시킴으로써53) 그의 아들 최온은 집권자의 장인이 되었다. 결국 최선의 후손들은 최씨집권자와 중첩된 혼인으로인적관계를 이루어 무신들의 지위향상의 계기를 마련하였고, 동시에 최선가

^{47) 《}高麗史》 권 101, 列傳 14, 王珪.

^{48) 《}高麗史》 권 129, 列傳 42, 崔忠獻.

⁴⁹⁾ 위와 같음.

^{50) 《}高麗史》 권 95. 列傳 8. 任懿 附 濡.

^{51) 《}高麗史節要》권 15, 고종 9년 4월.

^{52) 《}高麗史》 권 99, 列傳 12, 崔惟清 附 宗峻・昷・坪.

^{53) 《}高麗史》 권 129, 列傳 42, 崔忠獻 附 流.

문도 번성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앞서 최충현가문과 인척관계를 맺는 조영인의 손자 趙季珣의 딸도 최항의 배필이 되었다.⁵⁴⁾ 최항의 장인이 된 조계순은 최항집권기에 재상이 되었다. 따라서 조영인가문은 2대에 걸쳐 최씨집권자와 통혼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례를 검토할 때 문신들이 최씨집권층과 통혼함으로써 최씨정권의 정치·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적인 위치를 높임에 기여하였음을 알 수있다. 동시에 문·무신 간의 각기 다른 입장과 의도가 서로 부합되었기 때문에 통혼이 이루어졌던 점도 결코 간과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가문에 대한 열등의식을 지녔던 최씨집권자들은 문신가문과 혼인함으로써 사회적 지배계층속에 굳게 뿌리를 내리고,55) 문신의 명문가문과 결합함으로써 그들의 정치·사회적인 지위를 이용코자 하였던 것이다. 반면에 문신의 입장에서는 최씨집권층과의 혼인을 통해 인척관계를 맺고, 이의 반대 급부로 그들의 사회적 진출을 보장받고 나아가 정치적 지위를 확보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최씨정권기의 문신들은 정권의 합리화와 집권세력의 지위를 높히는 일에 기여하는 한편, 또 다른 정치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고려시대의 가장 중요한 관직인 재추·승선·대간의 활동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면 문신들의 구체적인 역할의 내용이 밝혀진다.56)

첫째 문신들은 산천의 裨補 延基에 관한 일이나 지방에서 일어난 반란의 진압, 또는 왕의 죽음에 따른 복상기간의 논의 등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재추회의에 참석하였다. 그리하여 최씨정권의 제반정책을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재추는 무신란 직후와는 달리 최씨집권기에 들어와 모든 국정에 참여하였다. 초기 무신정권기에는 重房에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했는데, 최씨정권기에는 중방을 배제시키고 재추들을 사제에 모아 국정을 논의하도록 하였다. 이는 중방의 권한을 약화시키려는 최씨집권자의 정치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또한 최씨집권자는 자신의 의

^{54) 《}高麗史》 권 129. 列傳 42. 崔忠獻 附 沆.

⁵⁵⁾ 朴菖熙, 앞의 글(1969), 109쪽.閔賢九, 〈高麗後期의 權門世族〉(《한국사》8, 국사편찬위원회, 1977), 17쪽.

⁵⁶⁾ 이하 서술은 金塘澤, 앞의 글(1987), 112~125쪽을 참조하여 요약 정리한 것이다.

견이라 하더라도 이를 재추회의의 의결을 거치게 함으로써 그들의 정책을 훨씬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만들었다.

둘째로 문신들은 최씨정권의 인사행정 수행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것은 承宣이 최씨집권자의 전주권 행사를 합리화시켜 주었던 것으로 알 수 있다. 승선은 최씨정권의 인사행정에 따른 비난을 감소시켜 주었다. 최씨집권자는 이부와 병부를 통하지 않고 그들의 사제에서 백관의 전주를 행했는데, 이것은 인사행정에 다수의 관리가 관여하는 것을 차단시키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여기에 승선을 참여시킴으로써 최씨정권의 인사행정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음을 가장하려 하였다. 인사행정은 출세와 직결되는 것이었으므로 많은 관리들의 관심의 대상이었고, 이에 대한 불만은 커다란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었으므로 최씨집권자는 왕의 비서와 같은 존재인 승선을 여기에 참여시켰던 것이다. 그리하여 인사행정에 따른 관리들의 불만을 적절히 무마하고 해소시킬 수 있었다.

최우가 그의 사제에 政房을 설치하고 여기에 승선이나 내시들을 속하게 했던 사실도 최씨집권자에 의한 인사행정이 왕의 의도와 같았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결국 승선은 최씨집권자의 인사행정에 대한 비난을 감소시켜 주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리하여 최씨정권은 전주권을 완전히 장악하는데 성공하였다.

셋째 최씨집권자들은 자신들이 꺼리는 인물들을 대간으로 하여금 탄핵케함으로써, 문신들은 무신정권을 두둔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고려시대의 대간은 諫靜·封駁과 관리의 탄핵·규찰·서경 등의 권한을 행사하였다.57) 대간은 최씨정권기에 들어와서도 그 기능을 상실하지 않았다.58) 그러므로 대간은 최씨집권자들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였다고도 할 수 있다. 실제로 대간은 최씨집권자에게 반발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렇다고 대간이 최씨집권자를 규제했던 것은 결코 아니었다. 최씨정권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인물들을 대간은 철저하게 탄핵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대간은 사소한 문제에 있어서는 최씨집권자와 견해를 달리 할 수 있었으나, 정권유지와 관련된 중요

⁵⁷⁾ 朴龍雲、《高麗時代 臺諫制度研究》(一志社, 1980).

⁵⁸⁾ 朴龍雲, 위의 책, 96~97쪽.

한 문제에 대해서는 최씨를 적극 응호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대간은 최씨정권을 견제했다기보다는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정권의 유지를 뒷받침했다고 할수 있다. 요컨대 최씨집권자는 대간의 활동을 어느 정도 보장함으로써 그들의 정적을 대간으로 하여금 탄핵케 하는 명분을 마련할 수 있었다.

최씨정권기에 문신들의 위와 같은 역할과 기여로 문신들의 정치적 지위는 점차 높아지게 되었다.⁵⁹⁾ 그리하여 최씨정권의 전개에 따라 문신들의 지위는 향상되었다.⁶⁰⁾ 최씨정권기 문신의 정치적 지위를 시기별로 나누어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최충헌 집권기에는 정권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군사력에 의존하였으므로 최충헌은 무신들을 정치권력에서 배제시킬 수 없었다. 그리하여 이 시기에는 무신들이 문신들을 압도하였고, 따라서 문신들은 그들의 관직에 따른 정치 권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다. 곧 최충헌집권기에는 무신이 문신보다 우월한 정치적 지위를 차지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최우집권기 이후에는 문신들의 지위가 점차로 향상되었다. 최우는 자신에게 협력하는 한 문신과 무신은 다를 바 없었으므로 문신들의 협력도 필요하였을 것이다. 그가 寒士를 많이 발탁하였음은 이와 같은 필요성 때문이었다. 한편 최우는 무신들의 정치적 지위가 높아지는 것을 경계하였다. 왜냐하면 무신들의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군사적인 힘을 이용하여 최씨 정권에 반기를 들 염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최우는 고위무신들을 견제・억압하게 되었고 반대로 그가 등용한 문신들을 우대하게 되었다. 또한 최우집권기에 있어서 문신들의 중요 관직 점유율이 최충헌집권기에 비해 증가하였다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다.61) 요컨대 최우집권기 문신의 정치적 지위의 향상은 최충헌 이래 최씨집권자들의 무신에 대한 견제와 아울러 그들이 등용한 문신들에 대한 우대의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최항집권기에 오면 최항과 정치적 견해를 달리 한 문신들이 많았다. 이처

⁵⁹⁾ 金塘澤, 앞의 글(1987), 126~130쪽.

⁶⁰⁾ 李基白,《韓國史新論》新修版(一潮閣, 1990), 202·205\.

⁶¹⁾ Edward J. Shultz, The Military—Civilian Conflict of the Koryo Dynasty, The Studies on Korea in Transition, 1979에 의하면, 문신의 관직 점유율이 최충헌집권기가 62%였는데 대해 최우집권기에는 70%로 증가한 것으로 보고 되었다.

럼 문신 가운데 최항과 견해를 달리 할 수 있는 인물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최항이 권력을 세습한 이후 기존의 정치질서를 개편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기 때문이다. 최항은 최우의 후계자로 내정되는 과정과 권력세습의 과정에서 많은 관리들의 반발이 있었으므로 최우정권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정치 세력을 구축하였다. 따라서 최우집권기의 문신들은 최항과 의견을 달리할 수도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문신들이 최항과 다른 정치적견해를 피력할 수 있었다는 것은, 최우집권기 문신들이 정책에 추종만 했던 것과는 좋은 대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문신들의 관직 점유율도 최우집권기보다 증가하였다 한다.62) 최항집권기 문신의 정치적 지위는 최우집권기보다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최의집권기는 1년에 불과하였으므로 문신의 정치적 지위에 큰 변화는 없었을 것이다. 문신들이 무신에 비해 정치적 지위가 향상되었다지만 문신의 정치적 지위가 무신보다 우세하였던 것은 결코 아니었다. 정치의 실권은 무신이장악하였던 시기였으므로 문신은 정치적 지위에 있어서 무신보다 열세였다.⁶³⁾

무신의 정치적인 지위가 문신보다 우월하게 된 것은 무신란 이후부터이었다. 문신 가운데 유력자는 무반직을 겸하였는데 윤인첨과 문극겸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었다.⁽⁴⁾ 이들은 전술한 바와 같이 상장군이란 무반직을 겸하였다.

고위문신의 무반직 겸대와 아울러 일반문신들에게 무반직을 제수하기도 하였는데, 이것은 出仕路를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과거에 합격한 문신들이 출사로를 바꾸는 것은 무신란 직후에는 별로 없었다. 왜냐하면 문신들은 무반으로 나가는 것을 영예롭게 생각하지 않아 이를 꺼려했기 때문이다.65) 따라서 초기 무신정권기의 문신들은 문반직을 고수함으로써 무신에 대한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씨정권 이후에는 과거에 합격한 많은 문신들이 무반직을 제수받게 되었다. 이처럼 문신들이 무반직으로 바꾼 것은 무신정권이 장기화함에 따라 무신에 대한 우월감만을 고집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과거에 급제하였다 하

⁶²⁾ Edward J. Shultz, 위의 글에 의하면, 최항집권기 문신의 관직 점유율은 74% 였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최우집권기의 70%보다 증가한 것이다.

⁶³⁾ 金塘澤, 앞의 글(1987), 130~134쪽.

⁶⁴⁾ 邊太燮, 〈高麗期의 文班과 武班〉(《史學研究》11, 1961; 《高麗政治制度史研究》, 一潮閣, 1971).

^{65)《}東國李相國集》 권35, 尹承解墓誌銘.

더라도 쉽게 관직에 나갈 수 없었을 뿐 아니라 빠른 출세에도 지장이 많았던 것이다. 따라서 무신란 이후 최씨정권까지 지속된 무신의 우월한 정치적 지위 는 문신으로 하여금 무반으로 출사로를 바꾸는 계기를 마련하였던 것이다.

요컨대 최씨정권기 문신들의 무신에 대한 정치적 지위의 열세는 많은 문신들이 무반직을 택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 특히 과거합격자들이 무반으로 출사로를 바꾸었는데, 이는 무신란 직후에는 별로 없었던 현상이었다. an신 정권이 장기화되고 더구나 과거에 급제했다 하더라도 곧 관도에 나아갈 수 없었던 당시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결국 이와 같은 문신의 무반화는 무신의 문반직 겸대와 함께 문・무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었다.

〈金毅圭〉

4. 무신정권기 문신의 정치의식과 그 성향

무신정권기의 문신은 정계 은퇴 계열인 隱居文士와 疎外文人 그리고 정계 등장 계열인 登用文臣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그런데 대체로 볼 때 정계 은퇴 계열의 문사와 문인들은 무신정권에 대한 반발의식으로 출세를 단념하였으므로 도피적인 성향을 지녔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정계 등장계열의 문신들은 무신정권에 대해 참여의식을 갖고 집권층에게 타협·아부하면서 활동하였으므로 어용적인 성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인식은 문신들의 내면적인 고충과 갈등을 도외시한 피상적인 고찰에지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무신정권기의 문신들을 양분하고 정치의식과 그성향을 유형화하여 논단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1)

정계 은퇴 계열의 은거문사들은 무신정권에서 입신출세하는 것을 단념하였으나 한결같이 도피적인 성향만을 지녔던 것은 아니었다. 神駿과 悟生이무신란을 맞아 불교에 귀의한 뒤 환속하지 않고 고결하게 여생을 마쳤다고하지만 무신정권을 향한 동경과 관심은 있었던 것 같다.

¹⁾ 金毅圭,〈高麗武人執權期 文士의 政治的 活動〉(《韓沽劤博士停年紀念 史學論叢》,知識産業社,1981),281쪽.

시골집에 오디는 익고 보리는 빽빽해지기 시작할 때…무슨 일로 거친 마을 쓸쓸한 곳에서 수풀 건너 가끔 두 서너 마디씩 보내오는가(《憩聞瑣錄》).

위의 글에서 신준은 입산하여 승려가 된 뒤 울적한 심정을 토로한 시에서 슬프고 한스럽게 자신의 처지를 자위하고 있다. 물론 시는 엄격한 역사적인 사실을 나타내는 기록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시에 표현된 내용은 시대상이 반영된 역사성을 내포하기 마련이다.

또한 公州 산장에서 지방자제들을 가르친 적이 있었던 신준은 그의 제자를 서울로 보내어 과거에 응시케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보낼 수밖에 없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였다.

信陵公子가 精兵을 통솔하여 멀리 邯鄲에 가서 큰 공을 세우니, 천하의 영웅들이 모두 다 본받아 좇았으나 눈물 흘리며 그를 보내던 늙은 侯籯 가엽구나(《櫟翁稗說》前集 1).

한편 伽倻山에 은거했던 오생도 현실정국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컸던 것 같다. 이는 그가 남긴 黃山江樓時의 끝절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누워서 어부의 노 저으며 하는 말 들어보니, 먼지 휘날리며 말 달리는 사람들은 우리 무리 아니라 하네(《櫟翁稗說》後集 2).

즉 먼지를 휘날리며 말을 달리는 집권세력이 아직도 무신인 것을 풍자하면서 개탄하고 있다. 무신정권에 등용되지 못했던 임춘·오세재 등 소외문인들이 정계에 등장하고자 하였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이로써 볼 때 증거할만한 남긴 글은 미흡하지만 정계에서 은퇴한 은거문 사들과 소외문인들이 다시 출세하는 것을 완전히 단념하지 않고, 정계로의 등장을 선망하거나 동경하고 있었다고 추론하는 것은 지나친 억측만은 아닐 것이다.

무신란 후 정계에 등장하였던 문신들은 무신정권에 기여하면서 활동하였으나 한결같이 완전무결하게 집권세력에 동조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등용문신들의 어용성에서 간과할 수 없는 고충이 있었음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무신정권기를 맞아 전반적으로 의기가 떨어지고 위축된 문신들은 시 짓고 술 마시며 서로 즐기고 사귀어 놀면서 老莊高踏의 風을 즐기게 되었다. 그리 하여 이인로는 당세의 명유였던 吳世才·林椿·趙通·皇甫抗·咸淳·李湛之와 더불어 忘年友를 맺어 시와 술로써 즐겼으므로 중국 六朝시대의 江左7賢에 비교하였다고 한다.²⁾ 여기서 7인의 망년우는 문자 그대로 연령의 고하를 망각한 동지회·동우회와 같은 것으로,³⁾ 西晋代의 竹林七賢(稽康·阮籍·阮蔵·山燾·向秀·劉伶·王戎)과 유사한 것이다. 그리고 이같은 망년우의 모임은 「竹林高會」라고 하였다 한다.⁴⁾

그런데 무신정권에 결탁하여 최씨정권기에 들어와 크게 출세함으로써 후세 史家로부터 최씨문객이란 貶評을 받았던 이규보가 忘年七賢과 교유하였다는 사실은 당시 문신들의 동태를 알려 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는 이규보가 그들의 분방한 기질에 공명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으로 이규보와 이담지와의 문답내용과 이규보의 시구를 살펴 봄으로써 알 수 있다.

7현은 늘 술을 마시고 시를 지어 곁에 사람이 없는 것 같았다. 世才가 사망하여 湛之가 奎報에게 말하기를 '자네가 가히 보충하겠는가'라고 하니 규보가말하기를 '7현이 어찌 조정의 관작에게서 그 궐석을 보충하고자 한단 말이오. 아직 稽康・阮籍의 뒤에 이를 계승한 자가 있었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소'라 하자 모두 크게 웃었다. 또 시를 짓게 하니 규보가 입으로 지어 불렀는데 그 한구절에 '7현 안에 누가 연찬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자 온 좌중이 모두노여워하는 기색이 있었다(《高麗史》권 102, 列傳 15, 李奎報).

즉 이규보는 망년7현의 고답적인 태도에 대해 못마땅해 하고 7현 중에 연찬하는 사람이 없으므로 그들과 한자리에 있는 것을 즐겨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세재가 사망하여 7현의 1명이 궐석되었을 때 이규보는 그 보충의 대상자로 거론되었다. 이것은 이규보가 정권에서 소외되어 있던 문인들과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오세재가 실의 속에 전야로 영락하여 곤궁 속에서 사망하였을 때 이규보는 애도의 글을 통해 무신집권층의 행폐를 울분에 찬 눈으로 개탄하였다.5) 또한 이규보는 사소한 관직을 얻는 데도 뇌물이 요구되었던 사회현실을 비판하기도 하였다.6)

^{2)《}高麗史》 권 102. 列傳 15. 李仁老.

³⁾ 李丙燾, 《資料韓國儒學史草稿》(서울대 문리대 國史研究室, 1959), 84쪽.

^{4)《}破閑集》 권末,後序.

^{5)《}東國李相國集》 권 37, 哀詞祭文.

이로써 무신정권에 아부하였던 이규보의 울분과 불만의 정도를 짐작할 수 있고, 사회비리에 대하여 감연히 규탄하고 반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는 정사에 뜻이 맞지 않으면 時諱에 저촉될 염려가 적은 시에 가탁하여 비방하고 오연히 대취하여 미친 듯하였으므로 세상사람들이 미친사람으로 여겼다.7) 하지만 무신정권의 험난한 세태가 장기화되자 이규보의 반발의식은 변화하였다. 당시의 정치상황에서 문신들이 취할 태도를 이규보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나의 두려운 바는 남에게 있지 않고 바로 나에게 있다. …그러므로 성인들이 사람을 두려워 않고 오직 입을 두려워 하였으니, 실로 입을 삼가면 처세에 무슨 탈이 있겠는가(《東國李相國集》권 1, 畏賦).

이규보는 자기 몸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신의 입을 두려워하고 말을 삼가 함으로써 처세와 행동에 근신을 기하게 되었던 것이다.

등용문신으로서 무신집권자에게 반발하고 집권층의 비리와 부패를 지적한 것은 비단 이규보만이 아니었다. 文安公 兪升旦은 민가가 날로 퇴락해 가는 것을 막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을 한탄하였고,8) 한림학사 柳澤은 집권자인 최충헌의 횡포에 대하여 이를 규탄하는 疏文을 지어 반발하였다.9) 또한 한림학사 陳澕는 무신들의 농민 수탈을 고발하였다.10)

등용문신들의 반발의식과 비판적인 태도는 마침내 무신정권을 외면하고 부정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韓惟漢이란 문신의 경우를 통해서도 알 수있다. 서울에서 대대로 살았던 한유한은 최충헌이 국정을 마음대로 하고 벼슬을 파는 것을 보고 난이 장차 일어날 것이라 하여 가족을 이끌고 智異山에 들어가 숨어서 평생을 살았다고 한다. 최충헌은 그에게 西大悲院錄事를 제수하려하였으나 끝내 응하지 않음으로써 관직에 나아가는 것을 거부하였다.¹¹⁾ 한유한의 행동은 최충헌정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취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6) 《}東文選》 권 96, 舟賂說.

^{7)《}東國李相國集》 26. 呈尹卽中威書.

^{8)《}東文選》 권 13. 書德豊縣公館.

^{9) 《}高麗史節要》 권 14, 고종 3년 3월.

^{10)《}梅湖遺稿》詩 桃源歌.

^{11) 《}高麗史》 권 99, 列傳 12, 韓惟漢.

위와 같은 사례를 종합해 볼 때 정계에 등장한 문신들이 어용적인 기질을 갖고 모두 무신정권에 결탁하여 활동하였다고 보는 것은 다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무신정권하의 문신들은 모두 참여의식과 반발의식을 함께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정계 은퇴 계열의 문신들은 무신정권에 등용되는 것을 동경하는 경향이 있었고 반면에 정계 등장 계열의 문신들은 무신정권에 완전무결한 동조자가 될 수 없었다.12) 따라서 무신정권에 참여하였던 등용문신은 말할 것도 없고 무신정권을 외면하였던 은거문사와 소외문인들도 정권에 등용되기를 갈망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무신정권기의 문신들의 정치의식과 그 성향은 각기 양면성을 갖고 있었으므로 이를 유형화하여 단정할 수 없다고 본다.

이상 살핀 바와 같이 무신란이 발발하면서 문신들은 대살륙을 당하였으나 그 존재가 소멸된 것은 아니었다. 무신란의 와중에서 화를 면하고 목숨을 구한 문신들은 그들의 입장과 성격에 따라 제각기 무신정권에 달리 대응하였다. 이른바 은거문사들은 무신들과 타협을 거부하고 지방에 은둔하면서 맑고고결한 절개와 지조를 고수하였다. 난 후 무신정권에 사환하려 했으나 등용되지 않아 불우한 일생을 마친 소외문인들도 있었다. 은거문사와 소외문인은 정계에서 은퇴한 계열로 볼 수 있다. 반면에 난 후 문신지위가 그대로 유지된 舊文臣과 신규로 무신정권에 참여하였던 신진문신이 주류를 이룬 등용문신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정계에 등장한 계열이었다.

난 직후 문신에 대해 보복적이었던 무신들은 오래지 않아 옛 문신들을 포섭하고 신진문신을 등용하였다. 이에 따라 초기 무신정권기의 문신들은 난전과 같이 관직을 모두 독점하지는 못하였으나 관직의 점유율은 무신들을 앞섰고 중요 관직에도 임명되었다. 그러나 문신들은 무신들에게 견제되어 정치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그 후 최충헌이 등장하여 최씨정권이 확립되자 문신들은 다시 등용되고 집권자로부터 우대를 받게 되었다. 최충헌은 집권하기 전에 친분관계를 맺었 던 좋은 가문출신의 문신들 뿐만 아니라 정권에서 소외되었던 문인들도 등 용하였다. 최씨정권의 문신들에 대한 우대정책은 그들을 장악함으로써 문무

¹²⁾ 金毅圭, 앞의 글, 293쪽.

양반의 지배자로서 정권을 유지하고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고도의 용인술이었다고 할 수 있다. 문신들이 최씨정권에 발탁되어 등용되려면 반드시 정권과 밀착된 측근 문신의 천거가 필요하였고, 그들은 座主로 있으면서 門生중에서 믿을 수 있는 인물을 선발하였던 것이다. 좌주와 문생간의 정치적 유대는 평생 지속되었으므로 이들에 의해 형성된 인맥은 최씨정권의 장기화에 큰 힘이 되었다.

이처럼 문신들이 우대를 받기는 하였으나 그들의 정치활동은 최씨집권자의 지지가 전제되었으므로 문신들은 무신정권과 결탁하게 되었다. 문신들은 문장가로서의 명성의 영구성과 가문의 영달을 위해 최씨정권과 타협하고 집권층에게 아부하면서 그들의 활로를 개척해 나갔다. 이리하여 문신들은 집권자의 충실한 예속적 굴종자가 되고 말았다.

최씨정권하의 문신들은 정권의 합리화와 정당화에 크게 기여하였고, 최씨가문과 통혼함으로써 최씨정권의 사회적 지위를 높임에도 공헌하였다. 최씨가문과의 혼인은 문신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사회적 진출과 정치적 위치를 확보하려는 의도 때문이었다. 또한 문신들은 宰樞・承宣・臺諫 등 고위관직에 임명되어 국정 수행에 참여하면서 무신정권을 옹호하였다.

문신들의 위와 같은 역할로 그들의 정치적 지위는 점차 높아지게 되었다. 그렇다고 문신의 정치적 지위가 무신보다 우세하였던 것은 결코 아니다. 무 신정권의 시기였으므로 정치적 지위에 있어서 문신은 무신보다 열세였다. 이 에 따라 문신의 무반화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무신정권기의 문신은 정계 은퇴 계열인 은거문사와 소외문인 그리고 정계 등장 계열인 등용문신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들 문신들은 무신정권에 대하여 참여의식과 반발의식, 어용적 성향과 도피적 성향을 함께 가지고 있었으므로 무신정권에 등용되는 것을 동경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무신정권에 완전무결한 동조자가 되지 못하였다. 등용문신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은거문사와 소외문인들도 대부분 정권에 등용되기를 갈망하였다고 볼 수 있다.

〈金毅圭〉

찾 아 보 기

$[\neg]$

가노 家奴 75, 128 가동 家僮 $128 \sim 130$ 가병 家兵 70, 99, 129, 145, 177, 179, 180 가야산 伽倻山 221, 245 간의대부 諫議大夫 29,81,225 감단 邯鄲 243 감무 監務 156 감수국사 監修國史 51 강감찬 姜邯贊 159, 161 강도 江都 196 강양공 자 江陽公 滋 160 강윤소 康允紹 114, 115 강종 康宗 52, 85, 229, 231 강종묘정 康宗廟庭 229 강좌7현 江左七賢 244 강화도 江華島 192 강화수획사 江華收獲使 156 강화천도 江華遷都 13,67,77,85,88, 95, 96, 186, 189, 190, 196, 210, 236 30, 215, 221, 225 개경 開京 개국공신 開國功臣 221 개국후 開國侯 159, 161 개성 開域 190 거란 契丹 179 검교장군 檢校將軍 견룡 牽龍 18, 20, 39, 159 견룡군 牽龍軍 33,34,80 견룡행수 牽龍行首 190 견룡행수직 牽龍行首職 18,19 경겸 景謙→임경겸 任景謙 경계의 난 庚癸의 亂 29,220

경군 京軍 41, 42, 195, 221 경기 京畿 190 경기도 京畿道 185 경대승 慶大升 $2, 3, 5, 21, 33 \sim 45, 49,$ 51, 53, 63, 64, 82, 83, 126, 127, 130~132, 134, 150, 177, 204, 205, 210, 211, 214, $223,225 \sim 227$ 경대승 정권 慶大升 政權 34, 82 경령전 景靈殿 202 경별초 京別抄 182, 195 경복사 景福寺 10 경상진주도 慶尙晋州道 경손 慶孫→김경손 金慶孫 경숙 景肅→임경숙 任景肅 경시서 京市署 149 경외별초 京外別抄 182 경원군개국공 慶源郡開國公 159, 161 경원록 慶元祿 107 경위대 警衛隊 180 경인란 庚寅亂 199, 209, 210, 213, 216 경절문 慶截門 12 경주 慶州 29, 39, 42, 43, 179 경주별초 慶州別抄 182 경주별초군 慶州別抄軍 178,182 경진 慶珍 21, 31, 32, 35, 36, 51 경창궁주 慶昌宮主 160 계강 稽康 244 계사의 난 癸巳의 亂 29, 218 고득시 高得時 130, 148, 200 《고려사》 《高麗史》 4, 7, 17, 26, 33, $36, 54, 90, 93, 97, 146, 147, 153, 157 \sim 160,$ $163, 166 \sim 168, 170, 178, 184 \sim 187, 193,$ 195, 213, 219~221 《고려사절요》 《高麗史節要》 165,

169, 179, 200, 213

국자감 대사성 國子監 大司成 고수겸 高守謙 172 221 고신 告身 209, 225 국학학유 國學學諭 231 고자장 高子章 148,200 군부사 軍簿司 168,170 군수 郡守 고종 高宗 1, 2, 4, 5, 13, 55, 57, 58, 63, 219 군인전 軍人田 $65, 72, 74, 77, 78, 85, 90, 91, 93 \sim 95, 105,$ 27 권돈례 權敦禮 106, 113, 151, 154~156, 158, 162, 165, 175, 217, 220 176, 179, 180, 186, 189, 194, 226, 231, 233, 권무관 權務官 32 234 권무관직 權務官職 21, 32, 33 고주사 告奏使 권무정 權務政 224 166 공민왕 恭愍王 권판이부사 權判吏部事 167, 170, 171 237 《공방전》《孔方傳》 귀법사 歸法寺 10 12 공부낭중 工部郎中 209, 224 귀비 貴妃 158 공부상서 工部尚書 43 귀주 龜州 183 공부시랑 工部侍郎 224, 225 금군 禁軍 22, 34, 36, 39, 64, 128, 149 공부원외랑 工部員外郎 209 금내 6관 禁內六官 155 공사노비의 반란 公私奴婢의 叛亂 215 금성탕지 金城湯池 77 금오위 金吾衛 187,192 공생 貢生 143 금오위대장군 金吾衛大將軍 공양왕 恭讓王 220 《공업록》 《功業錄》 236 금오위섭랑장 金吾衛攝郎將 55 공역 工役 82 금의 琴儀 172, 230~235 공음전 功蔭田 금학사 琴學士 221 232 공자 孔子 220 급사 給事 159 공주 公州 213, 219, 243 급사동정 給事同正 153 공주명학소 公州鳴鶴所 급사중 給事中 52 과시 科試 226 기관 記官 158 관기시 觀碁詩 234 기거주 起居注 18, 20 관노의 난 官奴의 亂 214 기두 旗頭 214 교관경수 敎觀兼修 12 기로회 耆老會 211 교위 校尉 기병 騎兵 180 21, 32, 35, 36, 64, 140, 147, 150, 187, 188 기병대 騎兵隊 187 교위방 校尉房 147 기양도량 祈禳道場 151 교정도감 敎定都監 4,5,65,66,68,89, 기온 奇蘊 177 $91, 152 \sim 157, 159, 162, 206$ 기탁성 奇卓誠 19, 20, 27, 28, 31, 32, 교정별감 敎定別監 2,5,65,69,94,110, 48, 49 $117 \sim 119, 152 \sim 155, 157, 176$ 기홍수 奇洪壽 51, 211 길인 吉仁 교정소 敎定所 156 128 교정수획원 敎定收獲員 김경 金鏡 156 115, 117 구전수직 口傳授職 169 김경손 金慶孫 57, 76, 94, 183 구정 毬庭 김광윤 金光允 202 8 《국선생전》 《麴先生傳》 김계봉 金季鳳 12 172

김기손 金起孫 57, 76, 77	김자정 金子廷 115
김남보 金南寶 153	김자후 金子厚 115
김대재 金大材 102,106	김전 金佺 56
김덕명 金德明 71,87,143	김준 金晙 51,56
김돈의 金敦義 148, 200	김준 金俊 1, 2, 4, 6, 13, 58, 74, 75, 78,
김돈중 金敦中 17	$79, 86, 87, 97 \sim 117, 119 \sim 121, 129, 145, 146,$
김득룡 金得龍 107	152, 153, 155, 157, 166, 167, 175, 176, 182,
김미 金敉 75, 76, 85	187, 191, 193
김방경 金方慶 159, 161	김준거 金俊琚 62
김보당 金甫當 29, 30, 37, 42, 48, 81, 82,	김준거의 난 金俊琚의 亂 153
164, 224, 225	김중귀 金仲龜 56,172
김보당의 난 金甫當의 亂 20,29,30,	김지경 金之鏡 169,170
42, 81, 205, 216	김지대 金之岱 76
김보정 金寶鼎 108	김창 金敞 88, 172
김봉모 金鳳毛 57, 84, 207, 235, 236	김취려 金就礪 55, 56
김부 金富 55,56	김태서 金台瑞 57
김부식 金富軾 17, 159, 161	김평 金平 20,48
김사미 金沙彌 9	김홍취 金洪就 102,106
김사미・효심의 난 金沙彌・孝心의 亂	
214	[ㄴ]
김상정 金尚挺 115	
	남로병마사 南路兵馬使 29
김석재 金碩材 106	日上で「「「田崎共馬侠 Z5
김석재 金碩材 106 김세충 金世沖 186	남로선유사 南路宣諭使 18
김세충 金世沖 186	남로선유사 南路宣諭使 18 남반 南班 98
김세충 金世沖 186 김숙 金淑 149	남로선유사 南路宣諭使 18 남반 南班 98 남적 南賊 148
김세충 金世沖 186 김숙 金淑 149 김승 金昇 168	남로선유사 南路宣諭使 18 남반 南班 98 남적 南賊 148
김세충 金世沖 186 김숙 金淑 149 김승 金昇 168 김승준 金承俊 100, 102, 105, 106, 107,	남로선유사 南路宣諭使 18 남반 南班 98 남적 南賊 148 당장 郎將 2, 21, 22, 71, 100, 107, 110,
김세충 金世沖 186 김숙 金淑 149 김승 金昇 168 김승준 金承俊 100, 102, 105, 106, 107, 110, 111, 115	남로선유사 南路宣諭使 18 남반 南班 98 남적 南賊 148 당장 郎將 2, 21, 22, 71, 100, 107, 110,
김세충 金世沖 186 김숙 金淑 149 김승 金昇 168 김승준 金承俊 100, 102, 105, 106, 107, 110, 111, 115 김식재 金式材 102, 106	남로선유사 南路宣諭使 18 남반 南班 98 남적 南賊 148 당장 郎將 2, 21, 22, 71, 100, 107, 110, 114, 120, 143, 147, 156, 172 당장방 郎將房 147
김세충 金世沖 186 김숙 金淑 149 김승 金昇 168 김승준 金承俊 100, 102, 105, 106, 107, 110, 111, 115 김식재 金式材 102, 106 김신윤 金莘尹 224, 225	남로선유사 南路宣諭使 18 남반 南班 98 남적 南賊 148 낭장 郎將 2, 21, 22, 71, 100, 107, 110, 114, 120, 143, 147, 156, 172 낭장방 郎將房 147 내도방 內都房 6, 177
김세충 金世沖 186 김숙 金淑 149 김승 金昇 168 김승준 金承俊 100, 102, 105, 106, 107, 110, 111, 115 김식재 金式村 102, 106 김신윤 金莘尹 224, 225 김애 金皚 116	남로선유사 南路宣諭使 18 남반 南班 98 남적 南賊 148 낭장 郎將 2, 21, 22, 71, 100, 107, 110, 114, 120, 143, 147, 156, 172 낭장방 郎將房 147 내도방 內都房 6, 177 내순검군 內巡檢軍 22
김세충 金世沖 186 김숙 金淑 149 김승 金昇 168 김승준 金承俊 100, 102, 105, 106, 107, 110, 111, 115 김식재 金式材 102, 106 김신윤 金莘尹 224, 225 김애 金皚 116 김약선 金若先 71~76, 85, 86, 99, 135	남로선유사 南路宣諭使 18 남반 南班 98 남적 南賊 148 낭장 郎將 2, 21, 22, 71, 100, 107, 110, 114, 120, 143, 147, 156, 172 낭장방 郎將房 147 내도방 內都房 6, 177 내순검군 內巡檢軍 22 내시 內侍 46, 150, 239
김세충 金世沖 186 김숙 金淑 149 김승 金昇 168 김승준 金承俊 100, 102, 105, 106, 107, 110, 111, 115 김식재 金式材 102, 106 김신윤 金莘尹 224, 225 김애 金皚 116 김약선 金若先 71~76, 85, 86, 99, 135 김언량 金彦良 55	남로선유사 南路宣諭使 18 남반 南班 98 남적 南賊 148 낭장 郎將 2, 21, 22, 71, 100, 107, 110, 114, 120, 143, 147, 156, 172 낭장방 郎將房 147 내도방 內都房 6, 177 내순검군 內巡檢軍 22 내시 內侍 46, 150, 239
김세충 金世沖 186 김숙 金淑 149 김승 金昇 168 김승준 金承俊 100, 102, 105, 106, 107, 110, 111, 115 김식재 金式材 102, 106 김신윤 金莘尹 224, 225 김애 金皚 116 김약선 金若先 71~76, 85, 86, 99, 135 김언량 金彦良 55 김용재 金用材 102, 106	남로선유사 南路宣諭使 18 남반 南班 98 남적 南賊 148 당장 郎將 2, 21, 22, 71, 100, 107, 110, 114, 120, 143, 147, 156, 172 당장방 郎將房 147 내도방 內都房 6, 177 내순검군 內巡檢軍 22 내시 內侍 46, 150, 239 내시당장 內侍郎將 148
김세충 金世沖 186 김숙 金淑 149 김승 金昇 168 김승준 金承俊 100, 102, 105, 106, 107, 110, 111, 115 김식재 金式材 102, 106 김신윤 金莘尹 224, 225 김애 金皚 116 김약선 金若先 71~76, 85, 86, 99, 135 김언량 金彦良 55 김용재 金用材 102, 106 김원의 金元義 52	남로선유사 南路宣諭使 18 남반 南班 98 남적 南賊 148 당장 郎將 2, 21, 22, 71, 100, 107, 110, 114, 120, 143, 147, 156, 172 당장방 郎將房 147 내도방 內都房 6, 177 내순검군 內巡檢軍 22 내시 內侍 46, 150, 239 내시당장 內侍郎將 148 내시원 內侍院 46, 150
김세충 金世沖 186 김숙 金淑 149 김승 金昇 168 김승준 金承俊 100, 102, 105, 106, 107, 110, 111, 115 김식재 金式材 102, 106 김신윤 金莘尹 224, 225 김애 金皚 116 김약선 金若先 71~76, 85, 86, 99, 135 김언량 金彦良 55 김용재 金用材 102, 106 김원의 金元義 52 김윤성 金允成 97, 98	남로선유사 南路宣諭使 18 남반 南班 98 남적 南賊 148 당장 郎將 2, 21, 22, 71, 100, 107, 110, 114, 120, 143, 147, 156, 172 당장방 郎將房 147 내도방 內都房 6, 177 내순검군 內巡檢軍 22 내시 內侍 46, 150, 239 내시당장 內侍郎將 148 내시원 內侍院 46, 150 내시원외랑 內侍員外郎 165 내시장군 內侍將軍 19, 148
김세충 金世沖 186 김숙 金淑 149 김승 金昇 168 김승준 金承俊 100, 102, 105, 106, 107, 110, 111, 115 김식재 金式材 102, 106 김신윤 金莘尹 224, 225 김애 金皚 116 김약선 金若先 71~76, 85, 86, 99, 135 김언량 金彦良 55 김용재 金用材 102, 106 김원의 金元義 52 김윤성 金允成 97, 98 김윤숭 金允升 148	남로선유사 南路宣諭使 18 남반 南班 98 남적 南賊 148 당장 郎將 2, 21, 22, 71, 100, 107, 110, 114, 120, 143, 147, 156, 172 당장방 郎將房 147 내도방 內都房 6, 177 내순검군 內巡檢軍 22 내시 內侍 46, 150, 239 내시당장 內侍郎將 148 내시원 內侍院 46, 150 내시원외랑 內侍員外郎 165 내시장군 內侍將軍 19, 148 내신밀직 內臣密直 169
김세충 金世沖 186 김숙 金淑 149 김승 金昇 168 김승준 金承俊 100, 102, 105, 106, 107, 110, 111, 115 김식재 金式材 102, 106 김신윤 金莘尹 224, 225 김애 金暟 116 김약선 金若先 71~76, 85, 86, 99, 135 김언량 金彦良 55 김용재 金用材 102, 106 김원의 金元義 52 김윤성 金允成 97, 98 김윤승 金允升 148	남로선유사 南路宣諭使 18 남반 南班 98 남적 南賊 148 당장 郎將 2, 21, 22, 71, 100, 107, 110, 114, 120, 143, 147, 156, 172 당장방 郎將房 147 내도방 內都房 6, 177 내순검군 內巡檢軍 22 내시 內侍 46, 150, 239 내시당장 內侍郎將 148 내시원 內侍院 46, 150 내시원외랑 內侍與外郎 165 내시원외랑 內侍與外郎 165 내시장군 內侍將軍 19, 148 내신밀직 內臣密直 169 내외도방 內外都房 6, 75, 98, 144, 145
김세충 金世沖 186 김숙 金淑 149 김승 金昇 168 김승준 金承俊 100, 102, 105, 106, 107, 110, 111, 115 김식재 金式材 102, 106 김신윤 金莘尹 224, 225 김애 金皚 116 김약선 金若先 71~76, 85, 86, 99, 135 김언량 金彦良 55 김용재 金用材 102, 106 김원의 金元義 52 김윤성 金允成 97, 98 김윤승 金允升 148 김위 金位 52 김인준 金仁俊→김준 金俊	남로선유사 南路宣諭使 18 남반 南班 98 남적 南賊 148 당장 郎將 2, 21, 22, 71, 100, 107, 110, 114, 120, 143, 147, 156, 172 당장방 郎將房 147 내도방 內都房 6, 177 내순검군 內巡檢軍 22 내시 內侍 46, 150, 239 내시당장 內侍郎將 148 내시원 內侍院 46, 150 내시원외랑 內侍與外郎 165 내시원고 內侍將軍 19, 148 내신밀직 內臣密直 169 내외도방 內外都房 6, 75, 98, 144, 145 노관 盧琯 165

노비 奴婢 182, 184, 185 노석숭 盧碩崇 50, 135 노약순 盧若純 148 노영순 盧永淳 52, 218 노효돈 盧孝敦 52 녹과전 祿科田 170 녹봉 祿俸 181, 189 녹사 錄事 158, 159, 160 농민의 반란 7 능문능리 能文能吏

[□]

86, 88

다방 茶房 46, 150 다루가치 達魯花赤 95 단오 端午 202 단오선사 端午宣賜 106 달단 韃靼(몽골) 179 대간 臺諫 32, 33, 66, 88, 200, 209, 238, 239, 240, 247 대관 臺官 209 대관전 大觀殿 202 대구 大邱 182 대녕부 大寧府 160 대녕후 경 大寧侯 暻 160 대몽항쟁 對蒙抗爭 185, 193, 207 대몽항전 對蒙抗戰 183, 191 대묘 大廟 202, 203 대부경신호위대장군 大府卿神虎衛大將軍 19 대부도(남양) 大府島 185 대사성 大司成 2,100,103,166,169,221 209, 225, 226 대성 臺省 대수장 大守莊 160 대씨 大氏 대장경 大藏經 234 대장군 大將軍 3, 18, 19, 20, 21, 23, 25, 27, 32, 42, 45, 50, 52, 59, 69, 70, 71, 95, 100, 101, 113, 116, 117, 135, 141, 147, 149, 150, 156, 172, 173, 175, 214

대정 大政 166 대정 隊正 32, 41, 71, 100, 103, 110, 130, 140, 143, 148, 200, 214 대제 待制 100 대집성 大集成 156 대호군 大護軍 170 도교승 都校丞 148 도당 都堂 78 도령 都領 30, 188, 194 도령낭장 都領郎將 105, 111 도목정 都目政 165, 166 도목정사 都目政事 165 도방 都房 $5 \sim 7, 38, 39, 64, 68, 69, 72,$ $79, 82, 89, 90, 92 \sim 94, 98, 99, 104, 117, 127,$ 129, 131, 132, 134, 138, 139, 140~146, 150, 154, 159, 162, 175~177, 179, 180, 193, 194, 210 도방 36번 都房三十六番 6, 175, 186 도방 6번 都房六番 176 도병마사 都兵馬使 67 도탕 跳蕩 184 도필리 刀筆吏 48 도호(안북)별초 都護(安北)別抄 182 돈오점수 頓悟漸修 12 돈장 敦長 200 돈장 敦章 130, 148 동경 東京 63, 178, 227 동경반란 東京叛亂 9 동경 야별초 東京 夜別抄 178, 179 동력보좌공신 同力輔佐功臣 106, 120 《동명왕편》 《東明王篇》 12 동반 東班 $21,32\sim34,150$ 동반직 東班職 209 동부록사 東部錄事 54 동북면병마사 東北面兵馬事 29, 30, 37, 81, 164, 227 동북면지병마사 東北面知兵馬使 동・서북면병마사 東・西北面兵馬使 22, 154 동수국사 同修國史 46, 200

동정직 同正職 24 동주(철원) 東州(鐵原) 7 동중서문하평장사 同中書門下平章事 45, 225 동지공거 同知貢擧 29, 225, 231, 232 동지추밀원사 同知樞密院使 113, 116 동화사 桐華寺 10, 182 두경승 杜景升 45, 46, 50, 51, 54, 55, 59, 135 득보 得甫 214등용문신 登用文臣 218, 222, 242, 243, $245 \sim 247$

[0]

마별초 馬別抄 5, 7, 99, 129, 144, 177, 179, 180, 181, 193, 195 만세제왕지도 萬世帝王之都 77 만적 萬積 215 만적의 난 萬積의 亂 9, 153 만전 萬全 4, 74, 154 만종 萬宗 74 마호 萬戶 108 망년우 忘年友 244 망소이 亡所伊 8, 128 망이 亡伊 8, 127, 148, 212 망이・망소이의 난 亡伊・亡所伊의 亂 8, 213 명종 明宗 $2, 4, 8 \sim 10, 18 \sim 21, 25, 27,$ $29 \sim 32, 36, 37, 41 \sim 47, 51 \sim 54, 56, 58, 63,$ 64, 81, 82, 85, 127, 134~136, 148~150, 164, 165, 178, 199~206, 208~210, 212~214, 216, $217, 222 \sim 224, 226 \sim 231, 235$ 명학소 鳴鶴所 8, 213 모정 茅亭 231 모정기 茅亭記 234 목종 穆宗 146, 147 몽고 蒙古 183, 189, 192 몽고군 蒙古軍 182 몽고병 蒙古兵 183, 190, 194, 195

몽고와의 30년 전쟁 13 몽고족 蒙古族 209 무반 武班 19, 26, 35, 48, 51, 52, 57, 131, 242 무비 無比 218 무산관 武散官 21, 226 무신란 武臣亂 $8, 17 \sim 33, 35 \sim 45, 47,$ 51, 54, 58, 63, 66, 67, 79~83, 112, 113, 120, $199, 203, 205, 208, 213, 215 \sim 217, 219, 221,$ 224, 225, 227, 228, 230, 236, 238, 241~243 무신정권 武臣政權 $1 \sim 3, 5 \sim 8, 11 \sim$ 13, 17, 20, 28, 29, 31, 35, 38, 40, 41, 43, 46, 49, 54, 82, 83, 96, 103, 109, 112, 116, 117, 119, 120, 121, 125, 126, 129, 130, 133, 134, 143, 146, 147, 150~152, 167, 173~175, 182, 199, 200, 204, 205, 212, 213, 215, 218~229, $233 \sim 235, 239, 241 \sim 247$ 무신정권기 武臣政權期 177 무신정치 武臣政治 무신집권기 武臣執權期 182 무오정변 戊午政變 105, 111, 120 무진정변 戊辰政變 $114,116 \sim 118$ 문객 門客 $7,61 \sim 63,68,70,73,92,$ 101, 129~133, 138, 139, 141~144, 175, 176, 문객집단 門客集團 131,133,134,136~ 139 문공원 文公元 160 문광단 文光旦 187 문극겸 文克謙 18, 34, 35, 44, 45, 173, 200, 218~211, 218, 222~225, 233, 237, 241 문무교차지법 文武交差之法 209 문반 文班 200 문사 文士 230, 231, 232 문생 門生 88, 201, 232, 233, 247 문영단 文英旦 187 문유보 文儒寶 51 문음 門蔭 228 문장필 文章弼 23, 24, 218 문졸 門卒 137

문하시랑 門下侍郎 207, 237 문하시랑동중서평장사 門下侍郎同中書 平章事 230,237 문하시랑평장사 門下侍郎平章事 52. 211, 229, 236, 237 문하시중 門下侍中 3, 31, 50, 54, 57, 58, 113, 158, 161, 162, 229, 236, 237 문학박사 文學博士 149 문황 文璜 187 미 籹→김미 金敉 미륵사 彌勒寺 109 미륵산적 彌勒山賊 8 민란 民亂 8, 81, 212 민영모 閔令謨 149, 201, 209, 211 밀양싸움 密湯싸움 9 밀턴 235

[日]

박기 朴琪 100,104 박문비 朴文備 172 박봉시 朴奉時 156 박서 朴犀 94. 183 박선 朴瑄 박성재 朴成梓 박송비 朴松庇 78, 98, 102, 104, 105, 106, 110, 114 박순필 朴純弼 22, 45, 47 박원실 朴元實 150 박인석 朴仁碩 220 박정부 朴挺夫 60 박제검 朴齊儉 149 박진재 朴晋材 50, 60~62, 86, 133, 135, 136, 137 박천식 朴天湜 102 박천식 朴天植 107 박초 朴礎 220 박항 朴恒 168 박훤 朴暄 76, 88, 166, 172, 236 박희실 朴希實 102~109

반독 伴讀 160 반무신란 反武臣亂 225 발화군 發火軍 184 배윤재 裵允材 29 백고좌 百高座 202 백선연 白善淵 218 백승현 白勝賢 110 백존유 白存儒 백좌도량 百座道場 202 백운거사 白雲居士 234 《백운소설》 《白雲小說》 12 백임지 白任至 22, 45, 47 법왕사 法王寺 202 벽상도형 壁上圖形 106 변식 邊軾 156 별동대 別動隊 178.182 별무반 別武班 178,184 별장 別將 2, 41, 48, 78, 103, 107, 130, 148, 156, 178, 190 増え 別抄 120, 178, 179, 182, 184, 189 별초군 別抄軍 9, 10, 177, 178, 182, 184 별초도령 別抄都領 48.178 별초령 別抄領 187 병농일치 兵農一致 병마록사 兵馬錄事 30 병마사 兵馬使 30,42,63 병부 兵部 239 병부낭중 兵部郎中 27,171 병부상서 兵部尚書 5,30,92,148,165 병부원외랑 兵部員外郎 148 보병 步兵 180 보한집 補閑集 12 보현원 普賢院 18 봉사10조 封事十條 4,55,84,165,206. 228 봉천우 奉天祐 169, 170 봉후입부 封侯立府 부곡 部曲 10

부곡민 部曲民

184

172

상서원 尙瑞院

[人]

사도 司徒 158 사윤 司尹 160 사인 舍人 사정유 史正儒 45 사직 司直 230 산직 散職 32 산원 散員 18, 19, 24~26, 147, 148, 156, 200 산원동정 散員同正 32 산원방 散員房 147 산행병마사 山行兵馬使 살리타 撒禮塔 183 3군 三軍 179,190 삼릉 三陵 202 삼별초 三別抄 5~7, 13, 93, 94, 96, 103, 104, 112, 117, 118, 120, 162, 175~177, $179, 181, 183 \sim 195, 208$ 삼별초정부 三別抄政府 185 36번 三十六番 145 삼위 三衛 187, 192 삼한공신 三韓功臣 230 삼한후벽상공신 三韓後壁上功臣 54 상락군개국공 上洛郡開國公 1,159, 161 상서 尚書 18,24 상서사 尙瑞司 5, 162, 167, 168, 172 상서우승 尚書右丞 148,225

상서좌복야 尚書左僕射 210 상약국 尙藥局 151,152 152 상의국 尙衣局 상장군 上將軍 2.3,22,42,48,51,52, 54, 71, 75, 79, 111, 112, 116, 128, 143, 145, 147, 169, 172, 200, 224, 241 상호장 上戶長 214 서경 西京 9,30,49,66,95,107,239 서공 徐恭 148,217 서대비원록사 西大悲院錄事 245 서령사 書令史 158,159 서리 胥吏 26,80,81 서반 西班 32, 45 서방 書房 7. 11. 69. 89. 90. $92 \sim 94$. 131, 144, 154, 162, 172, 174~177, 179, 212, 232 서방 3번 書房三番 7,175,186 서북면병마사 西北面兵馬使 183 서연방 瑞蓮房 75 서예 書藝 158~160 서장관 書狀官 204 서적점 書籍店 221 서제 書題 160 《서하집》 《西河集》 219, 221, 227 서해도병마사 西海道兵馬使 석령사 石令史 8 석린 石隣 21, 22, 26, 47, 53 선경전 宣慶殿 202 선군 選軍 41 선문 9산 禪門九山 12 선인열 宣仁烈 69, 78, 101, 154, 175 선주(덕원) 宣州(德源) 7 설화문학 說話文學 12 섭장군 攝將軍 49, 59 섭장수 聶長守 103 성균생원 成均生員 220 성사달 成士達 170 성적등지문 惺寂等持門 12 성주(성천) 成州(成川) 8

세정 稅政 91 순안후 종 順安侯 琮 118,155 소 所 10 숭덕 崇德 161 소래산 蘇來山 185 숭덕부 崇德府 158 승 丞 159,160 소외문인 疎外文人 218, 221, 222, 242, 승선 承宣 27, 52, 53, 92, 100, 107, 112, 243, 246, 247 소중화 小中華 220 168, 210, 225, 238, 239, 247 소첨사 小詹事 158, 159 승지 承旨 168 손석 孫碩 35,43,44 시양후 이 始陽侯 珆 160 손우 孫俁 207 시회 詩會 234 손청 孫淸 식읍 食邑 89, 91 송광사 松廣寺 신기 神騎 179 99 송국첨 宋國瞻 76 신기군 神騎軍 184 송군수 宋群秀 36 신도재상 新道宰相 46 송길유 宋吉儒 78,95,98,100,101,104 신돈 辛盹 171 신릉공자 信陵公子 245 송분 宋玢 120 송서 宋情 78 신보군 申步軍 184 송송례 宋松禮 96,120,193 신시용 神時用 169 송언상 宋彦庠 78,101 신의군 神義軍 6,69,79,89,93,103~ 송염 宋琰 120 105, 107, 108, 120, 154, 175, 185, 186, 193 송유인 宋有仁 23~25, 32~36, 149, 신의군 도령낭장 神義軍 都領郎將 103 204, 210, 215 신정 申丁 170 송저 宋詝 209 신종 神宗 4, 5, 9, 10, 51, 52, 56~58, 수국사 修國史 200, 224 62, 85, 90, 134, 136, 138, 151, 153, 165, 178, 182, 207, 229~231, 233, 234, 236 수로방호별감 水路防護別監 95 수리사 修理寺 10 신종묘정 神宗廟庭 229 수박 手搏 41 신준 神駿 217, 219, 220, 242, 243 수사공 守司空 45,225 신진사류 新進士類 1 수사공좌복야 守司空左僕射 신품사현 神品四賢 173 24, 52 수사도 守司徒 51 신호위 神虎衛 187 수찬관 修撰官 236 심 諶 109 수창궁 壽昌宮 149 십자각 十字閣 234 수춘후 항 壽春侯 沆 85 쌍도자 雙刀子 47 수태보문하시랑 守太保門下侍郎 224, 쌍암사 雙岩寺 수태사문하시랑 평장사 판이부사 守太 [0] 師門下侍郞平章史判事部事 229 수태위 守太衛 45 아상 亞相 44 숙비 淑妃 158 악소 惡少 126, 131, 132 숙종 肅宗 57, 184, 237 안경공 창 安慶公 泪 117,119,155 순검군 巡檢軍 22,65,91,148,217 안규 安珪 169

안동부 安東府 영통사 靈通寺 178 202 안심 安心 100 예부시 禮部試 234 안양사 安養寺 예부시랑 禮部侍郞 10 56 안찰사 按察使 41, 49, 76, 78, 101 예부원외랑 禮部員外郞 225 안홍민 安洪敏 예빈성 禮賓省 156 152 오광척 吳光陟 야별초 夜別抄 6, 69, 75, 79, 89, 92, 94, $18, 23 \sim 25, 44, 218$ 95, 96, 98, 101, 104, 105, 111, 112, 114, 116, 오생 悟生 217, 219, 220, 242, 243 117, 144, 145, 154, 175, 179, 184~188, 190 오세공 吳世功 221 ~ 195 오세문 吳世文 221 야별초지유 夜別抄指諭 오세재 吳世才 11, 210, 221, 227, 234, 186 약선 若先→김약선 金若先 243, 244 오수기 吳壽祺 양계병마사 兩界兵馬使 217 152, 172 양반 兩班 182, 184 오숙 吳淑 150 양반별초 兩班別抄 182 오숙비 吳淑庇 60,61 양선 梁善 160 오승적 吳承績 76 양숙 梁淑 19, 20, 27, 28, 31 5작제 五爵制 158 오정 吳挺 양온령동정 良醞令同正 148 18, 24 양인 농민 良人農民 오학린 吳學麟 189 221 양양공 襄陽公 85 옥령사 玉靈寺 41 양절익명공신 亮節翼命功臣 완자 完者 161 169 양평군 楊平郡 185 완적 阮籍 244 양화 梁和 107 왕계 王桂 236 왕륜사 王輪寺 어사 御史 220 10 어사대 御史臺 149 왕약수 王若壽 220 어사대부 御史大夫 32, 113, 117, 154 왕준명 王濬明 59, 73 어사대사 御史臺事 27 왕충 王冲 236 어사중승 御史中丞 101, 120, 211, 223, 왕후 王煦 170 224 외관 外官 32 여문 閲門 외도방 外都房 43 6, 144, 177 역역 力役 27, 80 외별초 外別抄 182, 188 《역옹패설》 《櫟翁稗說》 12,164,166, 용사 勇士 127 180, 219 용호군상장군 龍虎軍上將軍 24 영동정 令同正 150 우 禹→최우 崔瑀 영문하상서도성사 領門下尚書都省事 우간의 右諫議 224 161 우간의대부 右諫議大夫 29, 224, 225, 영사 令史 158, 159 237 영은관 迎恩館 153 우득규 禹得圭 107 영의 榮儀 220 우방재 于邦宰 23 영주 永州 우별초 右別抄 178, 182 185, 187 영천 永川 182 우복야 右僕射 23, 153

우봉별초 牛峯別抄 182 육번도방 六番都房 5 우부대언 右副代言 169 육번도방제 六番都房制 177 우부승선 右副承宣 109, 112, 113, 231, 육부 六部 209, 226 233 6위 6衛 146, 147 우상시 右常侍 윤관 尹瓘 184 169 우술유 于述儒 229, 230 윤세유 尹世儒 65,154 우승경 于承慶 52,53,59,60 윤인첨 尹鱗瞻 30, 49, 205, 208, 222, 우승선 右承宣 52, 57, 209, 223, 224, 224, 226, 241 237 은거문사 隱居文士 218~222, 232, 242, 우왕 禑王 168,171 243, 246, 247 우정언 右正言 224, 225, 230 음서 蔭叙 24,48 우학유 于學儒 응교 應敎 169 23~25 운문 雲門 182 의 竩→최의 崔竩 운문산 雲門山 178 의랑 議郎 169 울주방어부사 蔚州防禦副使 149,209 의업거인 醫業舉人 원돈신해문 圓頓信解門 12 의장대 儀仗隊 180 의종 毅宗 1, 7, 18, 19~21, 23, 25, 29, 원종 元宗 1, 2, 13, 110, 112, 113, 115, 30, 37, 38, 41, 42, 52, 57, 80~82, 146, 147, $118 \sim 121, 157, 175, 185$ 원주 院主 158 $199 \sim 201, 205, 208, 215 \sim 218, 221 \sim 225,$ 원주 原州 220 $229,235\sim237$ 위사공신 衛社功臣 103, 105, 106, 109, 의천 義天 12 50, 59, 135 111, 114, 116, 118 이경유 李景儒 이경직 李敬直 위위경 衛尉卿 27 30 위주별초 渭州別抄 182 이계장 李桂長 232 유경 柳璥 2, 58, 74, 78, 97, 100, 102, 이고 李高 18,19~23,25~28,126, 103, 105~107, 109, 114, 146, 166 147, 200 유관 儒官 이곡 李穀 12 206 유능 柳能 $69, 78, 100 \sim 102, 175$ 이공승 李公升 82, 148 유송절 柳松節 71,87,143 이공주 李公柱 75, 78, 87, 102, 103, 유수병마사 留守兵馬使 190 106, 129, 145 유승단 兪升旦 245 이광실 李光實 8,153 유원 留院 230 이광정 李光挺 21, 25, 26, 32, 34 유응규 庾應圭 2군 二軍 146,147 205, 209, 224, 235 2군 6위 二軍六衛 184.195 유인준 柳寅俊 29 유자량 庾資諒 이규보 李奎報 11, 12, 88, 172, 222, 218 유정 劉正 156 227, 230, 231, 233~235, 244, 245 유정선 柳挺先 이극인 李克仁 48 172, 182 유천우 兪千遇 78,93 이담지 李湛之 230, 231, 244 유택 柳澤 이린 李隣 18,237 245 이무공 李茂功 172 유필 庾弼 160

이문중 李文中 51 46, 81, 82 이보 李甫 190 이인로 李仁老 11, 12, 210, 217, 222, 이복기 李復基 227, 230, 231, 234, 244 20, 22, 26 이부 吏部 239 이자겸 李資謙 158, 159, 161, 162 이부상서 吏部尚書 이자성 李子晟 63 154 이부시랑 吏部侍郎 이자연 李子淵 159, 161 112, 171 이부원외랑 吏部員外郞 225 이장용 李藏用 119 이분희 李汾禧 116 이제현 李齊賢 12, 164, 168, 180, 190, 이빈문 利賓門 193, 195, 219 52 이색 李穡 이존오 李存吾 170 171 이석 李碩 116 이종규 李宗揆 230 이성계 李成桂 이준의 李俊儀 18 18, 62, 130, 204, 205, 225 이성의 李成義 156 이중약 李仲若 220 이소응 李紹膺 18, 19, 20, 27, 28, 35, 이지광 李至光 47 149 이지명 李知命 45, 174, 218, 225 이송 李松 116 이지순 李至純 214 이지심 李知深 이수지 李秀之 221 187 이순 李純 이지영 李至榮 214 47 이순우 李純佑 201 이춘부 李椿夫 18 이습 李槢 이택민 李澤民 116 216 이안국 李安國 이통 李通 190 171 이양 李陽 156 이혁유 李奕蕤 45, 217 이훈중 李勛中 이연소 李延紹 $102, 103, 104 \sim 107$ 62 이영령 李永齡 130, 148, 200 익선 翊善 160 이영진 李英搢 21, 26, 40, 43, 47, 51, 203 익양공부 翼陽公府 201 이유의 난 李儒의 亂 63 익주 益州(益山) 이유정 李裕貞 194 인영보 印榮寶 이윤수 李允修 148 인왕도량 仁王道場 202 이응열 李應烈 112 인종 仁宗 24, 160 이응초 李應招 224, 225 인주 仁州(仁川) 185 이의민 李義旼 $2 \sim 5, 21, 22, 29, 37 \sim$ 임경겸 任景謙 58 45, 48~53, 50, 56, 60, 63, 64, 80, 81, 83, 84, 임경숙 任景肅 58 90, 127, 128, 130, 132, 135, 137, 140, 153, 임극충 任克忠 208, 223, 224 157, 165, 204~206, 211, 214, 223, 227, 228 임부 任溥 237 이의민 정권 李義旼政權 $41.45 \sim 47.$ 임연 林衍 1, 2, 4, 6, 13, 97, 100, 102, $50, 53 \sim 55, 83, 211$ $104 \sim 106, 110 \sim 115, 118 \sim 121, 146, 152,$ 이의방 李義方 $10, 18 \sim 29, 31, 35, 36,$ 153, 155, 167, 175, 182, 191, 193 $38, 44, 62 \sim 64, 82, 83, 148, 149, 199, 200,$ 임원후 任元厚 57, 237 204, 205, 208, 213, 223~227, 237 임유 任濡 57, 84, 211, 229, 231, 232, 237 이의방정권 李義方政權 27, 30, 38, 42, 임유곤 林惟梱 113

임유무 林惟茂 1~7,96,110,112~ 114,118,120,146,152,155,157,167,175, 176,193 임의 任懿 57,237 임증연 林仲沇 169 임춘 林椿 11,12,211,220,221,226, 227,234,243,244 임효명 任孝明 57,237 임효순 任孝順 58

[ㅈ]

자비령 慈悲嶺 자위 自衛 190 잡류 雜類 22, 183 잡류별초 雜類別抄 182 장군 將軍 2, 4, 24, 27, 33, 35, 36, 42, 49, 52, 56, 60, 71, 78, 107, 113, 120, 130, 141 \sim 144, 147 \sim 150, 152 \sim 154, 156, 172, 200, 204 장군방 將軍房 147, 151 장박인 張博仁 149 장보 莊甫 148 장사 將士 127, 128, 131, 135 장수열 張秀烈 117 장순석 張純錫 29, 30 장언부 張彦夫 64,150 장차직장 掌車直長 171 재추 宰樞 179, 238, 247 재추양부 宰樞兩府 209 재추회의 宰樞會議 66~68, 212, 238, 239 전 倎 108 전공열 全公烈 183 전리사 典理司 168, 170 전봉별초 戰鋒別抄 179,183 전시과 田柴科 41 전시과제도 田柴科制度 187,192 전전승지 殿前承旨 98,103

전정 銓政 164, 201 전정 田丁 189 전존걸 全存傑 214 전주 銓注 91, 92, 149, 160, 163, 165, 167, 169, 171, 172, 212, 232, 233, 239 전주권 錢注權 91, 92, 165, 201, 212 전주사록 全州司錄 231 전주서기 全州書記 229 전중감 殿中監 27 전중내급사 殿中內給事 154, 224, 225 전중성 殿中省 218 전첨 典籤 158, 159, 160, 201 절령 岊嶺 30 정국검 鄭國儉 126 정균 鄭筠 31, 33, 53, 64, 149, 210, 213, 224 정극온 鄭克溫 55 정노 精弩 184 정당 政堂 165 정당문학 政堂文學 54,225,229 정방 政房 5, 7, 11, 88~92, 94, 100, 103, 107, 155, 159, 162~172, 176, 177, 179, 180, 214, 232, 239 정방보 鄭邦輔 $55 \sim 57$ 정방우 鄭邦祐 22, 26, 45, 53 정복수 鄭福綏 190 정사점필원 政事點筆員 92 정색상서 政色尚書 92, 163, 164 정색서제 政色書題 163, 164, 167 정색소경 政色少卿 92,163,164,167 정색승선 政色承宣 92, 163, 164, 167 정서 鄭叙 160 정세유 鄭世裕 53 정숙첨 鄭叔瞻 53.56.58~60.65.73. 75, 76, 86 정승 政丞 170 정안 鄭晏 56, 76 정안 政案 163, 201 정언 正言 173,231 정원녕 鄭元寧 55

정윤당 鄭允當 좌복야 左僕射 53 3, 45, 229, 230 정존실 鄭存實 148, 150 좌사간 左司諫 224 정주분도장군 靜州分道將軍 94,183 좌사간대부 左司諫大夫 224, 225 정중부 鄭仲夫 $2, 3, 5, 7, 17 \sim 21, 23 \sim$ 좌산기상시 左散騎常侍 27 $34, 36 \sim 38, 40 \sim 42, 44, 53, 63, 64, 80, 82$ 좌승선 左承宣 56 83, 126, 127, 129, 130, 134, 143, 147, 148, 좌우변삼별초소 左右邊三別抄所 157, 173, 174, 199, 200, 204, 205, 209, 210, 좌우별초 左右別抄 6, 103, 184, 186, 213, 217, 218, 223~227, 235, 236 190 좌우사금 左右司禁 정중부 정권 鄭仲夫政權 160 31,82 좌우사윤 左右司尹 정진 鄭稹 65 160 정추 鄭樞 171 좌우위 左右衛 187 정한규 鄭漢珪 좌우위상호군 左右衛上護軍 156 4, 154 정함 鄭諴 29 좌우첨사 左右簷事 158, 159 정해유시지변 丁亥流矢之變 24 좌정언 左正言 171,218,224 88, 201, 231, 232, 247 정혜쌍수 定禁雙修 12 좌주 座主 조계순 趙季珣 57, 238 주부 注簿 158, 159, 160 조계종 曹溪宗 주사동정 主事同正 12 조광한 曺光漢 주숙 周肅 75, 87, 98, 99, 145 169 주진군 州鎭軍 조문주 趙文柱 107 30 조선국공 朝鮮國公 158,161 주필 走筆 89 조역락 趙亦樂 220 주현 州縣 182 조영인 趙永仁 54, 57, 84, 207, 211, 229, 주현군 州縣軍 179 주현별초 州縣別抄 $231.235 \sim 238$ 183 조오 趙璈 118 죽동 竹同 214 조원정 曺元正 21, 26, 40, 45, 47, 53, 죽림고회 竹林高會 211, 244 150 죽림칠현 竹林七賢 11,211,228,230, 조위총 趙位寵 30, 31, 42, 49, 63, 81, 234, 244 《죽부인전》 《竹夫人傳》 148, 150, 179, 204, 205, 224 12 조위총의 난 趙位寵의 亂 30, 31, 48, 준존심 俊存深 60 66, 81, 178 중 衆 $135 \sim 137$ 조윤번 趙允蕃 116 중광사 重光寺 10 중랑장 中郎將 조일신 趙日新 170 42 조준 趙準 중방 重房 54, 57, 237 $3, 28, 30, 32 \sim 35, 63 \sim 68,$ 조충 趙沖 57 82, 146~151, 164, 172, 199~201, 209, 212, 조통 趙通 244 217, 238 종감 宗旵 64, 149 중방정치 重房政治 3,205 종동 終同 중서령 中書令 50, 59, 161 좌간의 左諫議 224 중서시랑평장사 中書侍郎平章事 21, 좌간의대부 左諫議大夫 171,224 30, 35, 45, 51, 58, 113, 208, 209, 223, 224, 좌별초 左別抄 229 187

《증보문헌비고》 《增補文獻備考》 195 진준 陳俊 19, 20, 26, 31 지공거 知貢擧 48, 201 진화 陳澕 245 지광 至光 집주 執奏 128 27 집현전대학사 集賢殿大學士 지귀수 池龜壽 153 221 지눌(보조국사) 知訥(普照國師) 12 지리산 智異山 245 [ㅊ] 지문하성사 知門下省事 21,32,45,56, 76, 77 차거수 車擧首 52 지방별초 地方別抄 177, 182~185 102, 106, 109, 114 차송우 車松祐 지방별초군 地方別抄軍 차약송 車若松 52, 56, 150 185, 189 지병마사 知兵馬事 차약춘 車若椿 30 56 지서경유수사 知西京留守事 차자방 箚子房 161 5, 162, 167, 168, 171 지순 至純 128 차장군 借將軍 4, 69, 70, 154 지안동부사부사 知安東府事副使 230 차중규 車仲規 18 지어사대사 知御史臺事 20, 45, 46, 차척 車倜 56 112, 149 찰방사 察使 232 지유 指諭 107, 159, 189 참지정사 參知政事 20, 27, 31, 45, 51, 지유낭장 指諭郎將 103 52, 54~57, 113, 155, 209 221, 224, 229, 지윤심 池允深 71,87 236, 237 지이부사 知吏部事 5, 75, 92, 145, 165 창릉 昌陵 202 지인방 知印房 5, 162, 167, 168, 172 창왕 昌王 171,172 지추밀원사 知樞密院事 32, 58, 208, 창주(창성) 昌州(昌城) 224, 225, 229, 230 채송년 蔡松年 113 지평현 砥平縣 185 채원 蔡元 19, 20, 27, 28, 130 직강 直講 160 채인규 蔡仁揆 113 직문하성사 直門下省事 120 채정 蔡楨 69, 70, 101, 113, 175 직사관 直史館 52 천마산 天摩山 233 직한림 直翰林 철주 鐵州(鐵川) 231 8 진강공 晋康公 천수군개국후 天水郡開國侯 161 159, 161 진강군개국후 晋康郡開國侯 천엽유화 千葉榴花 161 231 진강부 晋康府 89, 158, 159, 161, 162 천태종 天台宗 12 진강후 晋康侯 138, 158, 161 청교역리 靑郊驛吏 4, 65, 91, 153 진광인 晋光仁 청도 淸道 209 182 진대유 陳大有 214 첨서추밀원사 簽書樞密院事 107, 233 진도 珍島 185 초기 무신정권 初期 武臣政權 216. 진양공 晉陽公 110, 162 221,223진양부 晉陽府 $89, 90, 157 \sim 159, 161,$ 초적 草賊 183, 185, 190 162 최감 崔旵 168 진양후 晉陽侯 최광수 崔光秀 158, 159, 161, 162 9 진윤승 陳允升 최구 崔球 27 56

최당 崔讜 58, 224, 225, 229, 231 최린 崔璘 58, 77 최문본 崔文本 105 최문청 崔文淸 50, 59, 135 최산 崔山 63 최선 崔詵 $53, 58, 211, 229 \sim 232, 237$ 최세보 崔世輔 $22, 26, 40, 44 \sim 47, 200$ 최씨무신정권 崔氏武臣政權 189, 195 최씨정권 崔氏政權 $1 \sim 7, 11, 13, 47,$ $58, 59, 74, 75, 79, 85, 86, 88, 90, 91, 94 \sim 97,$ $99 \sim 101, 109, 111, 119, 121, 130, 146, 152,$ 162, 163, 166, 167, 172, 175~177, 180, 181, 191, 194, 195, 207, 216, 220, 226, 229, 230~ $265, 238 \sim 242, 247$ 최씨정권기 崔氏政權期 179 최양백 崔良伯 69. 75. 78. $101 \sim 103$. 129, 145, 154, 175 최여해 崔汝海 201 최영 崔瑛 69, 70, 101, 113, 175 최온 崔昷 58, 79, 105, 237 최우 崔瑀(怡) $2, 4 \sim 7, 10, 11, 13, 53,$ $56 \sim 58, 60, 62, 63, 67, 68, 70 \sim 78, 84 \sim 90,$ $93 \sim 95, 98 \sim 100, 103, 104, 109, 116, 129,$ 131, 133, 142~145, 152, 154~156, 158, 159, $161 \sim 163, 166, 167, 172, 174 \sim 176, 177, 179,$ 180, 185, 190, 192, 194, 207, 208, 212, 221, 228, 231, 232, 234, 236, 237, 239~241 최우정권 崔瑀政權 234, 236, 246 최원호 崔元浩 48 최유공 崔愈恭 152, 172 최유청 崔惟情 53, 57, 58, 84, 113, 160, 173, 217, 225, 230 최은 崔惠 115, 117 최의 崔竩 $2, 4, 6, 58, 68 \sim 70, 74, 78,$ $79, 97, 101 \sim 103, 105, 110, 111, 113, 129,$ 146, 152, 154, 156, 193, 230, 241 최이 崔恰(瑀)→최우 崔瑀 최자 崔滋 11, 12, 77, 230, 231 최종소 崔宗紹 113 최종준 崔宗峻 58, 113, 237

최주 崔注 187 최준문 崔俊文 71, 87, 143, 144 최춘명 崔椿命 94, 95 최충 崔冲 233 최충수 崔忠粹 47, 54, 55, 57, 60, 61, 85, 86, 132, 135~137, 206, 229, 237 최충헌 崔忠獻 $2\sim5, 7, 9\sim11, 44, 45,$ $47 \sim 52, 54 \sim 63, 65 \sim 69, 71 \sim 75, 78, 79, 83 \sim$ 87, 90~92, 97, 113, 128, 132~145, 152, 153, $157 \sim 159$, $161 \sim 164$, 172, $177 \sim 179$, 183, 205~207, 211, 212, 215, 223, 228~234, 236, 237, 240, 245, 246 최충헌정권 崔忠獻政權 50, 51, 55, 56, 58~60, 75, 84, 85, 94, 129, 229, 230, 245, 246 최평 崔坪 58, 237 최항 崔沆 $2, 4, 6, 57, 58, 68 \sim 70, 74 \sim$ $76, 78, 79, 84, 87, 90, 91, 93, 98, 99, 101 \sim$ 104, 112, 113, 129, 144~146, 152, 154~156, 162, 175, 181, 186, 228, 237, 238, 240 최향 崔珦 143, 144 최홍윤 崔洪胤 232 추밀원 樞密院 145, 150 추밀원부사 樞密院副使 32, 44, 45, 48, 52, 55, 56, 111 ~ 113, 152, 154, 172, 236 추밀원사 樞密院使 65, 79, 109, 208, 210, 224 추밀원우부승선 樞密院右副承宣 107 추밀원지주사 樞密院知奏事 154 춘추관 春秋館 52 출륙환도 出陸還都 115 충렬왕 忠烈王 160, 168, 169 충선왕 忠宣王 168, 169, 219 충숙왕 忠肅王 169 충순현 忠順縣 213 충주 忠州 218 충주별초 忠州別抄 182 충주판관 忠州判官 218, 225 충혜왕 忠惠王 170

치사직 致仕職

50

[7]

크롬웰 235

[≡]

탐라 耽羅(濟州島) 7 태자소부 太子少傅 45 태자태부 太子太傅 51 태조공신 太祖功臣 225 태주별초 泰州別抄 182 태학박사 太學博士 209 택주 宅主 158 통사사인 通事舍人 159 특진수태사 特進守太師 45

[亚]

《파한집》 《破閑集》 12, 219 판병부사 判兵部事 51 판사재사 判司宰事 210 판상서형부사 判尙書刑部事 224 판예부사 判禮部事 224, 225 판이병부사 判吏兵部事 161 판이부사 判吏部事 229 팔관회 八關會 202 팔만대장경 八萬大藏經 96 패관문학 稗官文學 12 평량공 민 平凉公 旼 207 평장사 平章事 3,52,56~58,73,75, 148 필도적 必闍赤(Biteshi) 163, 172, 176, 177

[ㅎ]

학사 學士 168 한관 翰官 227 한기 韓琦 153

한남공 정 漢南公 貞 229 한량 閑良 68, 92, 139, 140, 142, 189 한뢰 韓賴 18, 20, 22, 26 한림 翰林 204, 230 한림곡 翰林曲 232 한림승지 翰林承旨 234 한림원 翰林院 168, 201 한림학사 翰林學士 201, 221, 224, 245 한문준 韓文俊 34, 44, 210, 211 한사 寒士 231, 232, 240 한수도 韓受圖 148 한언국 韓彦國 20, 29, 30, 48 한유한 韓惟漢 245 한종유 韓宗愈 169 하직 限職 26 하취 韓就 208 한품 限品 83 함순 咸淳 230, 231, 244 함연수 咸延壽 172 함유일 咸有一 148 합문지후 閤門祗候 224 항 流→최항 崔沆 항마군 降魔軍 184 항몽전쟁 抗蒙戰爭 항몽투쟁 抗蒙鬪爭 1 해도입보 海島入保 해동조계종 海東曹溪宗 12 해안사 海安寺 204 해양후 海陽侯 110 행수 行首 159 행수직 行首職 36 향 珦→최향 崔珦 향 鄕 10 허공 許珙 112 허승 許升 126 현종 顯宗 147 현군수 玄君壽 188 합주부곡 陝州(陝川)部曲 형부상서 刑部尚書 21,53

홍규 洪奎 113, 120

홍원사 洪圓寺 203 홍원사 弘圓寺 10 홍중방 洪仲方 19, 20, 21, 25, 32, 33, 200 홍진 洪縉 113 홍호사 弘護寺 10 홍화사 弘化寺 10 화엄법회 華嚴法會 203 화평재 和平齋 18 황룡사 9층탑 皇龍寺 九層塔 42 황보관 皇甫瓘 231, 233 황보약수 皇甫若水 220 황보항 皇甫抗 244 황산강루시 黃山江樓詩 243 황주 黃州 218

황주목수 黃州牧守 62 황주서기 黃州書記 218, 221 황주판관 黃州判官 218 효군 驍軍 195 효순 孝順 57 효심 孝心 9 흑책정사 黑冊政事 170 흥녕부 興寧府 138, 158, 159, 161 흥덕궁 興德宮 158, 161 흥왕사 興王寺 10 흥위위 興威衛 187 희릉 禧陵 204 희종 熙宗 4, 52, 59, 65, 85, 90, 138, 151, 157, 161, 229, 230, 231, 233, 234

희종묘정 熙宗廟庭 230

집 필 자

개	<u>9</u>	민병하
	I.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무신란과 초기의 무신정권	
	최씨무신정권의 성립과 전개	김당택
3.	무신란과 최씨무신정권의 역사적 성격	김당택
4.	무신정권의 붕괴와 그 역사적 성격	정수아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1.	사병의 형성과 도방	류창규
2.	중방과 교정도감	민병하
3.	진양부와 정방 및 서방	민병하
4.	별초군의 조직	김윤곤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문신	
1.	국왕의 권위	나만수
2.	무신정권과 문신	김의규
3.	최씨정권과 문신	김의규
4.	무신정권기 문신의 정치의식과 그 성향	김의규

한 국 사

18

고려 무신정권

1993년 10월 25일 인쇄 정부간행물심의필 1993년 10월 30일 발행 (No. 93-14-7-38)

> 발 행 국 사 편 찬 위 원 회 427-01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6 전화 02-503-9544 인 쇄 탐 구 당 문 화 사 서울용산구 서계동 260-1 전화 730-8670